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은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국민이 선정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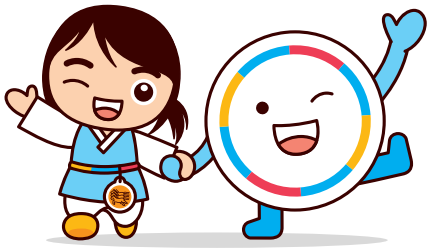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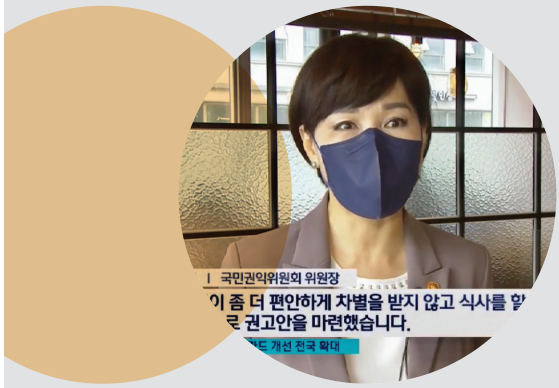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좀 더 편안하게 차별을 받지 않고 식사를 할
록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공립대 학생지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인 국민고충 현장 간담회

일러두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정책 소통 창구를 운영 중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불편과 부패유발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 5년 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었고, 총 255건의 제도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해 이행되었거나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동안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권고한
주요 사례 총 100선을 선정해 수록하였습니다.

- 1장에는 2021. 12월 국민생각함 설문을 통해 국민의 추천과 공감을 얻은 제도개선 사례 33선을 소개하였고, 제2장에는 기타 67선 사례의 핵심 내용과 기대효과를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 국민불편해소·권익개선 사례로 카드 디자인을 개선하여 급식아동에 대한 낙인효과를 예방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반값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의 국민 부담을 완화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등이 있고, 부패방지 제도개선 사례로 '퇴직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해외여행·황금열쇠 등 제공 관행 금지' '공공기관들이 승소 후 소송비용을 미회수·방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관행의 개선'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불편·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청렴 사회 구현을 앞당기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Contents

국민 공감 선정 사례 33선

Part 1 사회안전망 강화

1.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개선해 낙인효과 방지한다 10
2.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및 서비스 개선 12
3. 가족폭력 피해자 거주지 노출 위험 줄인다 14
4.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노력 평가한다 16
5.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런 어린이집 폐원 사라진다 18
6.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한다 20
7.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화재안전기준 엄격해진다 22

Part 2 일상생활 속 불공정 개선

8.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대폭 늘린다 24
9. 콘텐츠 구독서비스 해지·환불 쉬워진다 26
10. 채용신체검사, 국민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한다 28
11.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공고, 누구나 볼 수 있게 30
12. 홈쇼핑 방송심의 제재결과를 소비자 피해구제와 연동한다 32
13. 교복 구매, 가격은 잡고 여학생도 바지선택 가능 34
14. 들쑥날쑥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수강료 이제 그만 36
15. 채용비리 연루자에 더 이상의 관용없다 38
16. 지자체 퇴직자, 해외여행·황금열쇠 제공금지 40
17. 공공기관 회의참석수당, 나눠먹기식 챙기기 이제 그만 42

국민이 선정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

Part 3
예산누수 차단

18. 학생지도비용, 행정직원에 대한 지급 제한한다 44
19.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사전검증 강화한다 46
20. 비위행위자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한다 48
21. 공공기관의 임대사업, 정보공개로 부정청탁 예방한다 50
22.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참여기준 강화한다 52
23. 공공기관의 소송비용 미회수 방치하지 말라 54
24. 농어민 위한 면세유 혜택, 농어민에게 돌아가도록 56

Part 4
국민불편 해소

25.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58
26.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 60
27. 소규모 관급공사, 무리한 저가·과소 설계 관행 개선 62
28. 세제혜택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손본다 64
29. 기술계고 졸업자, 경력 경쟁기회 확대한다 66
30. 공동주택 수도료 부과, 기준을 바로 세운다 68
31.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품목 확대한다 70
32.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집행과정 공개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한다 72
33. 대입 전형료, 대폭 낮춘다 74

기타 사례
67선

34. 불볕 막아주는 고마운 그늘막, 시민 안전 해치지 않게! 78
35. 유족 두 번 울리는 화장장려금 제한 개선한다 78
36. 일상 속 차별, 하나씩, 꼼꼼히 바꿔간다 79
37. 장애아동 위탁부모도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가능 79
38. 국·공립대학 비법정협의체 회비 예산사용 제한 80
39. 소형건설기계 교육 이수증 허위 발급 방지 80
40. 노후 연금 수급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81
41. 공항 귀빈실, 특혜·불공정 사용 차단 81
4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한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82
43. 건설공사감리 하도급을 제한·금지 하도록 관련법률 정비 82
44.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물주차장 출입구 안전시설 규정 개선 83
45. 대학회계 내부신고 보호시스템 구축 83
46. 법무사, 변리사 등 자격증 대여·알선하면 처벌받는다 84
47. 공공기관 인터넷 유통사업자 선정 시 공개경쟁 강화 84
48.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음주운전 수사사실 소속기관에 통보 85
49. 공공조달 뇌물 제공업체 제재 감경 배제 85
50. 근로자 연말정산 시 실부양 계부·계모도 인적공제에 포함 86
51. 신고포상금제 내부직원에게 지급 제한한다 86
52. 매입 임대주택, 표준관리방안 마련한다 87
53.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 이해충돌방지 기준 도입 87
54. 신규 계좌 개설 시, 증빙서류 대폭 간소화 88
55. 지방의회예산, 편법·사적 사용 제한 88
56. 일자리 관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응시기회 확대 89
57.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 편법 사용 금지 89
58.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알 권리, 권익보호 강화한다 90
59.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자! 90
60. 범죄신고자도 보호 내용 사전에 고지 받는다 91
61. 공연예술 공모지원 사업, 중복지원 차단 91
62.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개입찰 제도 도입 92
63. 공무직 등 채용공고 없는 깜깜이 채용, 이제는 근절 92
64.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93
65. 자동차 이용 범죄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못해 93
66. 장애인의 자동차검사 예약 시 수수료 즉시 감면된다 94
67.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해진다 94

68. 공공기관 퇴직자단체 등 위법·부당한 예산지원 금지 95
69.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표절·도용 검증절차 마련 95
70.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해진다 96
71. 코로나로 학사일정 변동시 실제 개강일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 96
72. 색약자도 육군·공군 조리병으로 복무 가능 등 97
73. 복잡·난해한 행정제재 가중규정 명확해진다 97
74.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금지 등 부동산 투기 차단 98
7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시 군복무 기간도 포함 98
76. 대학 공개강좌 개설 운영의 법적 근거·기준 마련 99
77. 신입생 허위등록 방지 위한 검증·제재 강화 99
78. 학업중단학생도 인터넷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받으세요! 100
79. 고속도로 통행료 꼼수 면제차량 막는다 100
80.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및 음주치료 의무화 한다 101
81. 도로점용료 납부고지 전 소유권 변동 확인한다 101
82. 공공체육시설 특정단체 사용 제한한다 102
83. 의료분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율 통제시스템 강화 102
84. 채용비리로 계약 해지된 기간제 교원, 채용제한 근거 마련한다 103
85. 가정 배출 폐의약품 안전하게 별도 수거한다 103
86. 군 대체복무 취소 시 잔여기간 실제 복무기간 비율로 산정 104
87. 여권발급 제한기준 법령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104
88. 국·공립대학 교수 채용 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105
89. 재난정책보험 가입 확대 통해 재난지원금 절감 105
90. 약학대 학생 현장실무실습 등록금에 포함되어야 106
91.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106
92. 휴·폐업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 위험시설 안전조치 강화 107
93.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대상에 기술계고 추가 107
94.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 기간동안 편법운영 차단 108
95. 공급자 과실로 인한 갑작스런 전기요금 부담 전가 안돼 108
96. 가짜석유 근절 위해 엄정한 고발·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109
97. 장기기증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유급휴가 확대 109
98. 국가유공자 보호자 휴양림 입장료 면제로 예우 확대 110
99. 50세이상 은퇴연령층도 후계농 육성사업 지원가능! 110
100. 군 지뢰 매설현황 등 공개로 주민안전 강화 111

국민이 선정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

국민이 선정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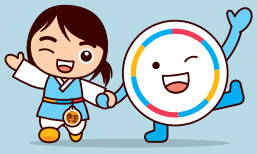

국민 공감 선정 사례

33선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사례 01

아동급식카드 디자인 개선해 낙인효과 방지한다

■ 과 제 명_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 대상기관_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권고일자_ 2021. 9. 6.
■ 기관수용, 2022. 9. 30.(이행완료 예정)

1 개 요

- 각 지자체는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해 아동급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각각 다른 운영으로 지역 간 격차 심화 및 급식 사각지대 발생

  * 단체급식소 운영, 아동급식카드 지급, 도시락 배달 등

  ※ '20년 기준 아동급식 지원 대상은 전국 약 31만 명, 연간 지원 예산은 약 3,000억원

- 결식 우려 아동이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아동급식카드'가 낮은 지급단가, 사용처 부족 등으로 급식에 어려움 발생

2 문제점

1 낮은 아동급식 지원단가 기준 준수

- 급식단가 최저기준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고, 일부 광역지자체는 적정 재원을 분담하지 않아 시·군·구별 지원단가의 과도한 편차 발생

  ※ '21.3월 기준, 급식단가 6,000원 이상 지자체는 74개(32.3%), 6,000원 미만은 155개(67.7%)

2 아동급식카드 이용 불편

- 지자체에 따라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급식카드 가맹 음식점이 부족하거나, 가맹점 위치 등 정보 제공 미흡
- 타인이 아동급식카드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디자인하여 급식아동에 대한 낙인 및 마그네틱 카드 결제방식으로 보안취약·결제 불편 사례 발생

3 음식점사업자의 아동급식카드가맹점 등록절차 불편 및 홍보 부족

- 일정 경제적 이익을 희생하는 가맹음식점이 다수이나, 급식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사회 기여에 대한 칭찬·홍보 부족

4 아동급식제도 운영의 효율적 관리 미흡

- 현재 복건복지부 표준매뉴얼 외 지자체를 점검·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국가 역할 미흡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아동급식단가 최저기준 준수

-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급식 지원 단가의 최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및 조례 개정
- 시·도와 시·군·구의 급식지원 예산 분담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실제 급식 사업을 운영하는 시·군·구의 부담 경감

2 아동급식카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수 확대, 지도서비스 제공 및 급식카드 디자인 개선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

3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등록·지원 방안

- 아동급식가맹점 온라인신청 등 등록절차 간소화 및 가맹점마크 개발·홍보

4 아동급식지원제도 운영·관리체계 개선

-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 아동급식제도 운영 관련 지표 신설 등 중앙부처의 감독·역할 강화

4 기대 효과

- 전국 약 31만 명 급식아동이 지역편차 없이 양질의 식사권을 보장받도록 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 네이버·카카오 등과 협업, 아동급식 제공 음식점 위치기반 지도서비스 시행 등을 통해 아동급식지원 사업 강화

사례 02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반값 인하 및 서비스 개선

■ 과 제 명_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대상기관_ 국토교통부, 17개 특별·광역시·도
■ 권고일자_ 2021. 2. 8.
■ 기관수용, 2022. 1. 31.(이행 중)

1 개 요

-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맞물려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하면서 주택 중개의뢰인의 경제적 부담 가중

※ 공인중개사법령에 정해진 중개서비스의 범위는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반면, 중개보수 요율체계는 주택가격에 연동되어 중개보수가 증가하는 구조

2 문제점

1 주요 거래구간의 과도한 중개보수 상한요율 적용

- 6억 이상 중개거래시 매매(0.5%)보다 임대(0.8%)에 더 높은 상한요율 적용
- 2001년 이후 거래금액 구간 단순화(9단계 → 5단계), 법정 최고요율 적용(매매 9억 이상 0.9%, 임대 3억 이상 0.8%)
- 주택가격 변동에 연동되는 중개보수 산정방식으로 비용부담 증가

2 주택거래 사고 대비 부적정한 손해배상 책임보장 한도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만연

-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보장 한도(1억원) 대비 과도한 중개보수 지불
-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법정 서비스(중개·알선, 등기확인, 계약서 작성)는 주택가격, 주택보수와 상관없이 동일

3 계약만료일 전 퇴거, 계약갱신 등의 중개보수 부담주체, 비용 불명확

- 계약 만료 이전 집을 비워줄 경우 대부분 임차인이 중개보수 부담
- 계약 파기 잘못이 어느 일방으로 인한 경우 이에 대한 관련 규정 부재
-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시 특별한 중개서비스 필요하지 않음에도 중개보수 또는 대서료 요구

4 과도한 중개보수로 인해 주거취약계층 경제적 부담 가중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21. 10월 이행완료)

- 최고요율 인하, 최고요율 적용구간 세분화, 6억원이상 9억원 미만 중개보수 역전 현상(임대>매매) 해소 등

2 개업 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확대

3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4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

※ (참고) 이행현황
- 국토교통부는 '21.10월 및 12월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완료 (중개보수 최고요율 인하(매매 0.9% → 0.7%, 임대 0.8% → 0.6%),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조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포함)

4 기대 효과

- 연간 부동산 거래를 하는 국민 약 694만명 대상 약 5조 7천억원 규모의 사회적비용(주택중개보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

※ 약 5조 7,168억원 = 3,468,936건(2020년 부동산 중개 건수) × 20.6%(2020년 9억원 이상 거래 비율) × 400만원(10억원 주택 거래시 중개보수 감소금액) × 2건

사례 03

가족폭력 피해자 거주지 노출 위험 줄인다

■ 과 제 명_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 권고일자_ 2020. 10. 26.
■ 대상기관_ 행정안전부 ■ 기관수용, 2021. 10. 31.(이행 중)

1 개 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를 시행 중이나 일부는 보호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문제 빈발
  - 가해자인 남편이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자녀의 주민등록 열람,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장모) 주소 추적 후 피해자(아내)의 거처 확인 등
    ※ 경찰청 통계 가정폭력사건 발생건수 : ('16)45,619건→('17)38,583건→('18)41,905건

2 문제점

1 가정폭력 피해자 입증서류 종류 제한

- 피해사실 입증서류가 제한되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에 입소 또는 상담한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곤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3조의2)의 피해사실 입증서류 종류가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발급서류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발급서류 불인정 등

2 비(非)동거 부모·자녀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불가

- 가정폭력 피해자와 다른 세대에 속한 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에 대한 열람제한 신청이 불가하여 2차 폭력에 노출될 우려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로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여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다른 세대인 피해자 부모 주소에 대해 열람제한 신청 곤란

3 가정폭력 행위자인 이해관계인의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 가정폭력 행위자가 이해관계인임을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
  ※ 열람제한 대상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임을 주장하여 피해자 주소를 열람하거나 이혼한 전(前) 배우자나 전(前) 부모 등도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열람

4 미성년 자녀 전입신고 사각지대 발생

- 가정폭력 피해자가 실제 양육하는 자녀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의 자녀 전입신고 개입이 자유로워 자녀 보호 한계
  ※ 가정폭력 피해자가 양육하는 비동거 자녀를 가정폭력 행위자가 본인의 주소지로 전입 가능하고, 세대주인 가정폭력 행위자 동의 없이 세대원인 자녀를 주소 이전 곤란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아동폭력 피해자 입증서류 확대

- 가정폭력 피해사실 증명서류 종류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확인서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 추가

2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허용

- 가정폭력 피해자가 비동거 자녀 또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에 대해서도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3 가정폭력 행위자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 제한

-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이 제한된 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자격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열람교부를 제한

4 자녀에 대한 전입신고 개선

- 열람제한 상태인 친권자의 자녀 전입신고 제한 및 자녀의 전입신고 시 가정폭력으로 주민등록 열람제한 상태인 전(前) 세대주의 동의 배제

4 기대 효과

- 가족주소 노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으로 최소 약 4만명 이상의 가족 폭력 피해자 및 가족 보호

※ 가정폭력 발생건수(경찰청): ('16) 45,619건 → ('17) 38,583건 → ('18) 41,905건

사례 04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노력 평가한다

■ 과 제 명_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권고일자_ 2021. 5. 10.
■ 대상기관_ 공공기관 ■ 기관수용, 2022. 5. 31.(이행완료 예정)

1 개 요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50인 이상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
- 그러나,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 미준수 및 고용부담금 납부금액 증가로 장애인 고용제도 실효성 문제 야기

※ 공공기관 의무고용 미준수 비율 : ('17년) 44.3% → ('18년) 43.4% → ('19년) 44.9%
※ 정부(비공무원) 및 공공기관 부담금 : ('17년) 220억 원 → ('18년) 280억 원 → ('19년) 400억 원 → ('20년) 약 800억 원 예상

2 문제점

1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률 미달

-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납부된 공공기관의 부담금은 연간 약 800억원('20년)이며, 단기 체험형 인턴 실적 채우기 등 고용 외면 속에 고용의 질 저하

2 장애교원 양성 부족으로 인한 채용률 저조

- 교원양성기관의 소극적인 장애교원 모집선발로 장애교원 고용률은 저조하고, 공무원 부문 고용부담금의 80%를 차지

3 육아휴직 및 중복 고용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금 부과

-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은 고용인원에서 제외되고, 법령상 근거 없이 중복고용된 장애인에 대해 하나의 사업주만 고용으로 인정

4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노력 미흡

- 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만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여 매년 의무구매 목표에 미달한 다수의 공공기관 발생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 관리체계 마련

- 공공부문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연차별 계획수립, 공공기관 성과평가 시 반영비율 상향 및 정규직 채용노력에 대한 지표 신설

2 장애교원 증원계획 수립 및 모집선발에 대한 평가 강화

- 연차별 장애교원 신규채용 증원 계획수립, 장애학생 선발비율 및 지원노력 등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평가에 반영

3 육아휴직 및 중복 고용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고용부담금 감경 근거 마련, 하나의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부과기준을 법령에 명시

4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체계 강화

- 물품 등의 발주 시 우선구매 가능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화 및 정기적으로 사전검토 여부 및 적정성 등을 관리

4 기대 효과

- 공공기관의 역할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고용 외면 극복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 유도

사례 05

부모도 모르는 갑작스런 어린이집 폐원 사라진다

■ 과 제 명_ 영유아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 폐원절차 개선방안 ■ 권고일자_ 2020. 5. 11.
■ 대상기관_ 보건복지부 ■ 기관수용, 2020. 12. 31.(이행 중)

1 개 요

- 만 0~5세 영유아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은 '19년 기준 37,371개로 '20년 예산은 4조 3,887억원에 달함
- 그러나, 갑작스럽게 어린이집이 폐원되면서 다른 어린이집·유치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고충이 지속 발생

※ 최근 5년간('15.~'19.) 폐원어린이집은 11,563개, 관련 민원은 1,800건

2 문제점

1 어린이집 폐원을 학부모에게 뒤늦게 통지

- 어린이집 폐원사실은 학부모 등에게 미리 통보되어야 함에도, 폐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돌연 폐원통지를 받은 학부모의 고충 가중

2 폐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 신청기회 제약

- 예상치 못한 폐원으로 뒤늦게 다른 어린이집에 입소 대기 시, 먼저 대기 중인 아동보다 순위가 밀리는 상황
- 어린이집이 없어진 상황임에도 미재원아동이 아닌 재원아동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입소 대기 가능한 어린이집은 2개소에 불과

3 불가피한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보육공백 해소 노력 부족

- 다른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절차가 종료되고 신학기를 앞둔 시점에 가장 많이 폐원되면서, 원활한 이동이 곤란한 상황

4 폐원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 보육대책 미흡

- 대규모 또는 농어촌어린이집·재개발로 인한 일괄폐원 등과 관련한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 대책은 미비한 실정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어린이집 폐원 고지 및 지자체 확인절차 강화

- 폐원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학부모 통지의무를 즉시 이행하도록 하고, 학부모 통지여부·전원조치 등을 확인한 후 어린이집 폐원 신고수리

2 폐원 어린이집 영유아의 어린이집 입소 신청기회 확대

- 폐원 예정아동의 입소대기 신청기관을 3개소로 확대하여 타 어린이집으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지원

3 보육권의 연속적 보장을 위한 긴급돌봄 등 연계 강화

- 어린이집이 학부모에 폐원통보 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역돌봄센터, 가정양육수당 신청 등을 안내하여 최소 2개월 전 사전연계 조치

4 어린이집 폐원에 대한 지자체 조정역할 확대

- 어린이집 폐원에 관하여 지자체의 대응 필요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폐원에 따른 수급·보육대책 심의 명문화

4 기대 효과

-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영유아의 보육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여 보육의 질과 연속성이 보장될 것으로 전망

사례 06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 참여 보장한다

■ 과 제 명_ 학교폭력 재심절차 공정성·합리성 제고방안
■ 대상기관_ 교육부
■ 권고일자_ 2017. 6. 12.
■ 기관수용, 2018. 12. 31.(이행완료)

1 개 요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의 기구가 가해학생의 경우 징계조정위원회(시·도교육청), 피해학생의 경우 지역위원회(시·도)로 이원화되어, 동일 사안에 다른 결정이 빈발하는 등 신뢰성 저하 및 비효율 발생

  ※ 재심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 892건('12~'16년)

- 또한,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에게 청구사실,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 통보 의무 규정이 없어 교육청별 다른 운영방식으로 공정성도 훼손

  ※ 17개 교육청중 미통보 7곳, 출석 · 진술 기회 미부여 11곳 ('16년 기준)

가해학생의 재심 청구부터 최종결과 통보까지 피해학생은 알지 못했고 자료제출 및 진술 등 재심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학 · 전학 등 중징계 처분이 출석정지 10일 · 학내봉사 10일로 변경되어 억울('17.2, 언론 기사)

2 문제점

1 재심절차 운영의 공정성·합리성 미흡

- 징계조정위원회는 피해학생에 재심결과 미통보, 지역위원회는 관련학생에 결정서 정본 미통보(결정 취지와 내용만 통보)
- 지역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부재
- 징계조정위원회가 학교장에게 재결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징계수위를 직접 변경 · 결정 시, 피해학생은 민사소송 외 이의제기 불가

  ※ 피해학생 측이 시·도교육청행정심판 청구 시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2 재심결정의 실효성 담보 미흡

- 출석정지처분 방학 중 이행, 퇴학처분자의 재심 · 소송 진행 중 졸업 시, 최종 퇴학결정이 되어도 사후관리 부재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가해학생 측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 측의 참여 보장

- 학교폭력 재심위원회 제도 보완 또는 일원화 입법 조속 추진
  ※ 교육부에 旣 권고('15년 9월), 의원입법 3건 회기종료로 자동폐기
-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시 피해학생에게 청구사실 통보,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 기회를 법령상 규정하여 공정한 재심기회 제공 및 대응권 보장

2 재심절차 운영의 공정성·합리성 강화

-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에 재심결과 안내 의무화
- 재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 보완
-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 시 구체적 징계수위 변경·결정 유보(관련법령 개정 시까지 재결정명령 활용)

3 재심결정의 실효성 확보

- 재심결정에 따는 처분유형별 조치이행시기 및 퇴학처분 사후관리규정 보완

4 기대 효과

- 재심위원회 절차의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 제고 및 신뢰성 확보
- 학교폭력 재심과정에서의 피해학생에게 필요정보 및 진술권 확보

사례 07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화재안전기준 엄격해진다

■ 과 제 명_ 견본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 대상기관_ 국토교통부, 소방청
■ 권고일자_ 2017. 7. 10.
■ 기관수용, 2017. 12. 31.(이행완료)

1 개 요

- 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져 화재 위험이 높고, 수천 명이 동시 이용하는 다중이용 시설임에도 화재안전기준이 미흡
- 또한, 축조 단계, 사용 중, 사용 후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되는 등 견본주택 화재 안전관리 강화 필요

2 문제점

1 견본주택 화재안전 관리 기준 미흡

- 견본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별 대피출구와 직통계단, 소화기 2대 이상 비치만으로 충분
  ※ 소화설비는 '소화기'가 유일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경보설비·피난설비는 설치 의무가 없으며, 실내장식품을 방염물품으로 써야할 의무도 없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됨
- 견본주택의 구조, 건축 소재,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기준은 화재발생 등 유사 시 대비에 미흡
  ※ 비상대피로가 소화기건축자재 등으로 막혀 있거나, 대피 출구 앞 철재 난간과 에어컨을 설치 등 위험성 매우 높음

2 화재안전관리 절차 미흡

- 관할 지자체에 축조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고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소방서장의 동의 불필요해 소방관서는 관내 견본주택 현황 파악 곤란
- 상당수 견본주택이 상시 건물처럼 사용됨에도 형식상 가설건축물이라 주기적 · 의무적 화재안전점검 대상이 아님
  ※ 유지·관리 규정이 없고, 시공사 축조 후 분양대행 업체의 위탁관리로 최초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도 소홀
- 축조 단계, 사용 중, 사용 후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특정점검 시 다수의 위반행위 반복적으로 적발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견본주택 화재안전 관리 기준 마련

-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인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에 포함 관리
- 각 지자체에 건축법 상 견본주택에 적용되는 건축기준 준수 안내

2 화재안전관리 절차 정비

- 각 지자체에 축조신고 수리 전에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반드시 사전협의 하도록 지도

  ※ 사전협의 근거 : 건축법 제20조제6항('17. 7.18.시행), 소방시설법 제7조제6항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에 준해 주기적인 소방안점점검 등 실시

4 기대 효과

- 견본주택의 안정성에 대한 주기적 관리를 통해 견본주택 화재 안전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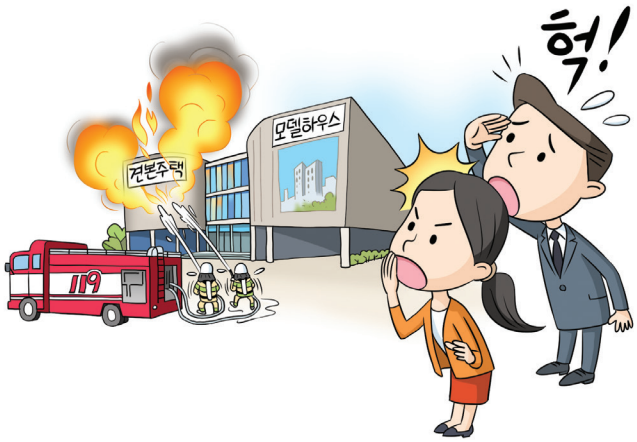

사례 08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대폭 늘린다

■ 과 제 명_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공정성 제고
■ 권고일자_ 2019. 8. 19.
■ 대상기관_ 공정거래위원회
■ 기관수용, 2019. 12. 31.(이행완료)

1 개 요

-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로 모바일 상품권 이용이 급증('18년 2조원대)하는 상황에서 불공정 약관 등으로 불만이 빈발함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 요인 개선 추진

2 문제점

1 종이형·금액형 상품권에 비해 불리한 사용기준

- 종이상품권과 다르게 물품·용역형 모바일 상품권은 짧은 유효기간(30일, 3개월)으로 사용을 못하는 상품권이 많고, 상품권에 기재된 물건이 없어 대체 물품 구매 시 차액 미반환 등으로 민원 유발

※ 모바일상품권에 명시된 상품 생산이 중단되어 다른 제품을 고르고 잔돈을 요구했으나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함('17.1월 국민신문고)

2 약관 적용제외로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

- 규정을 임의 확대해석하는 방식으로 유상판매 이벤트 상품권이나 영화예매권은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 등 불가

※ 모바일상품권은 5년까지 사용가능하다면서도, 사용기한 60-90일 도과 전에 매번 연장해야 하는 등 약관이 불편하고 불공정함('19.1월 국민신문고)

3 모바일 상품권 사용 제한 등에 대한 관련기준 미비

- 소멸시효 완성 전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미통지로 인한 낙전수입 발생,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추가대금 요구 등 분쟁 유발

※ 배달주문·방문구입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니 모바일상품권을 이유로 거부당함('18.7월, '19.1월 국민신문고)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환불 기준 합리화

- 모든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 확대 및 물품 제공이 불가 시 100% 환불해주도록 관련 내용 표시 의무화

2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적용대상 확대

- 유상 판매된 모바일 상품권, 영화예매권 등 표준약관 적용대상 포함

3 모바일 상품권 분쟁해결기준 등 강화

- 유효기간 도과 시 잔액반환가능 통지 의무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를 표준약관에 명시 및 추가대금관련 분쟁해결기준 마련

4 기대 효과

- 불공정 해소를 통한 소비자의 권리 보호 및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 카카오 등 주요 5개사의 4년간('14~'17년) 모바일 상품권 미청구액은 304억원 이상이며, 제도개선을 통해 '19년말 유효기간 도래로 소멸 예정인 94억원이 고객에게 환원 가능 예상('18.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례 09

콘텐츠 구독서비스 해지·환불 쉬워진다

■ 과 제 명_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피해 방지방안
■ 권고일자_ 2020. 5. 11.
■ 대상기관_ 문화체육관광부
■ 기관수용, 2020. 12. 31.(이행완료)

1 개 요

- IT 기술 발전과 함께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소비 방식이 '제품'에서 '서비스'로 변화하면서 구독경제가 빠르게 성장
- 그러나, 어려운 해지절차, 높은 대금전환 미고지, 착오유발 광고 등 콘텐츠 구독서비스의 불공정 계약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추진

2 문제점

1 복잡한 해지 절차로 환불 곤란

- 구매는 쉬우나, 복잡하고 숨겨져 있는 해지절차로, 해지시기를 놓치면 자동결제 연장되어 불필요한 요금 발생, 캐시나 포인트로만 환불되는 등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편 유발

2 불공정 약정으로 자동결제 피해구제 한계

- 이벤트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결제 일정 등을 고지하지 않아 금전적 피해 발생, 자동결제 후 취소 시 별도 기준이 없음에도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에만 환급

3 중요사항 불완전 고지로 이용자의 착오 유발

- 특가만 강조하고 계약 유지기한 등 중요내용 전면광고 미노출로 이용자 실수·착오를 유발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 제공한다는 포괄적 규정을 악용해 유의사항 내 정보를 작은 글씨로 기재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해지·환불에 있어 이용자 편의성 제고

- 구매 페이지에서 해지가 가능하게끔 경로를 일원화하고, 해지 시 대금 환급수단에 대해 구매 시 선택권 부여

2 부당한 자동결제 약정 방지

- 이벤트 종료 전 자동결제 일정 등 이용자에게 고지, 자동결제 후 취소 시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해지를 방해 금지 및 잔여대금 환급

3 중요한 내용의 표시·광고 명확화

- 전면광고에 계약 유지기한(의무결제 개월 수)을 명확히 표시·광고하고, 유의사항 내 중요한 내용의 고지 시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광고

4 기대 효과

- 콘텐츠 구독 서비스 이용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등 이용자 보호 강화

사례 10

채용신체검사, 국민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한다

■ 과 제 명_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방안
■ 대상기관_ 전체 공공기관
■ 권고일자_ 2021. 7. 19.
■ 기관수용, 2022. 2. 28.(이행 중)

1 개 요

- 국민의 구직활동 시 사업주의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로 인해 '경제적 부담과 구직기회 제한 등'으로 개선 목소리 높음

2 문제점

1 채용 시 구직자 부담의 신체검사서 여전히 요구

- 중앙·지자체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공무직, 기간제 등)과 공직유관단체 근로자 채용 시, 서류·면접합격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 신체검사서'를 여전히 요구

※ 309개 기관 실태조사 결과, 93.5%(289개)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며, 이중 85%(246개)가 구직자에게 비용 전가

2 기간제교원의 계약 때마다 반복되는 신체검사

- 각급 교육청(학교) 등에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은 짧은 경우 몇 개월 단위로 계약(채용) 때마다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하는 불편 발생

3 구직자에 과도한 채용 결격사유 규정 적용

- 다수의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등 근로자(비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과도한 구직기회 제한

4 건강검진과 채용 신체검사 중복에 따른 비효율

- 채용기간이 짧은 근로자는 같은 해 건강검진과 채용 신체검사를 모두 받아야하는 불편 발생

※ 건강검진 및 채용신체검사 모두 대부분 공통된 목표 질환에 대한 검사 진행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채용 신체검사 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 채용 신체검사 사용자 부담 의무화 및 관련규정 정비
- 채용기관(공공 및 민간)이 '신체검사 비용 등'을 구직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채용절차법 매뉴얼'에 관련 내용 구체화

2 기간제교원 채용 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 퇴직한 기간제교원을 퇴직일(계약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신체검사' 면제

3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준용 금지

- '합격/불합격' 판정이 있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비공무원 근로자 채용에 과도하게 준용하여 채용 결격사유로 적용하는 관행 개선
- 사무직 등과 달리 해당 업무 수행에 특정 신체적 조건이 요구되는 직종(근로자)에 대해서만 필요 시 별도의 규정을 마련

4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 적극 활용

- 채용기관 및 구직자가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가칭)' 제공 시스템 구축

4 기대 효과

- 연간 약 86만명(민간 74만명, 공공 12만명)의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 약 260억 원(검사비 3만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제공

사례 11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공고, 누구나 볼 수 있게

■ 과 제 명_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
■ 권고일자_ 2021. 9. 27.
■ 대상기관_ 17개 시·도 교육청
■ 기관수용, 2022. 2. 28.(이행 중)

1 개 요

- 사립학교 보조금 중 약 55%('19년 5조 6,847억원)가 교직원 인건비로 지출됨에도, 인사·채용비리, 보조금 부정수급 등 사학 부패 지속
  ※ '19.6월~'20.6월까지 권익위 '사학비리·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 296건 중 교직원 인사·채용 관련 신고 108건(36.5%)
- 교육청별로 상이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방식, 인건비 미지급 사유의 불명확 등 사립학교의 도덕적 해이 심각
  ※ 사립학교 사무직원 7,610명이 정부보조금으로 채용·운용 중('20년 기준)

2 문제점

1 채용 사전협의 불명확성·형식성

- 일부는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없이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채용 직전 기습적으로 절차를 밟거나 구두협의로 대체하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

2 채용원칙을 무시한 채용절차

- 학교 내 게시판에 채용공고를 하거나, 외부에서 찾기 힘든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일반인의 접근을 막아 채용의 공정성 저해
- 교육청에 따라 채용 공고기간이 상이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 취업준비생 등이 채용 공고를 접하기 곤란한 상황 발생
- 인사위원, 이사(장)의 특수관계인·이해관계인 등이 지원 시, 이사(장) 등이 심의에 참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

3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관리·감독 미흡

- 채용원칙 위반 시 인건비 지급제한 기준이 교육청마다 상이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사전협의 강화

- 교육청 사전협의 의무화 및 사전협의 기한, 협의방식(서면), 교육청 제출자료 서식 등 마련

2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절차 실효성 제고

-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문 게시,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누구든지 찾기 쉬운 곳에 배치 명시
- 채용공고기간을 명시하고,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전으로 채용공고기간 통일
-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지원시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 및 채용담당자(전형담당자, 심사위원 등) 윤리·보완 서약서 의무화
- 채용지원자가 학교 내 특수관계인이나 이해관계인 근무 여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채용지원 서식 마련

3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관리·감독 강화

- 사무직원 채용원칙 및 채용절차 미준수시, 인건비 미지급 명시

4 기대 효과

-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7,800여명의 채용절차를 투명화하여 취업준비생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사례 12

홈쇼핑 방송심의 제재결과를 소비자 피해구제와 연동한다

■ 과 제 명_ 홈쇼핑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방안 ■ 권고일자_ 2020. 7. 20.

■ 대상기관_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기관수용, 2020. 12. 31.(이행 중)

1 개 요

- 전통적 비대면 거래인 홈쇼핑은 TV를 활용한 상세한 설명, 편리한 주문, 소비자와의 신뢰 구축을 전제로 지속적 성장 추세

  ※ (시장규모) 19조 6,375억원 (매출액) 5조 1,289억원['18년, 17개 TV·데이터홈쇼핑]

- 그러나, 단시간 내 구매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 계약 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

  ※ (1372소비자상담) 15.417건 (소비자원 피해구제) 142건 (국민신문고민원) 865건['19년]
  (홈쇼핑 자체민원) 9,142건 (콜센터운영비) 1,951억원['18년]

2 문제점

1 허위·기만 등 제재가 피해구제로 연결되지 않는 불합리

- 홈쇼핑이 허위·기만 등으로 제재를 받아도,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받으려면 소비자원 등에 개별 신청 필요

2 홈쇼핑 제재결과를 소비자가 알기 곤란

- 과징금·관계자징계를 제외한 홈쇼핑 제재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 선택권 저해

3 홈쇼핑의 소비자 피해구제 유인 부족

- '소비자원 민원평가'를 통해 홈쇼핑의 소비자 보호노력을 방송평가에 반영하면서 피해구제 신청건수만 반영하여 구제유인 저하

  ※ 홈쇼핑에서 보상 처리하더라도 최종 감점 조치('19.8. 권익위 실태조사)

4 청약철회 및 사후관리에 대한 고지 부족

- 생방송 판매과정에서 청약철회와 사후관리에 대한 고지가 미흡하여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소비자 피해 빈발

  ※ 제품의 효능·장점·가격 등은 여러 번, 긴 시간, 큰 글자로 구두·자막고지 되는 것과 달리, 교환·반품·환불 등은 비교적 짧게 화면으로 고지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홈쇼핑 방송심의 제재결과를 소비자 피해구제와 연계

-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어 방송심의제재를 받은 방송상품에 대하여 모든 구매자에게 원스톱 피해구제 조치

2 홈쇼핑 제재결과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홈쇼핑 제재결과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소비자원이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안내

3 홈쇼핑의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소비자원 민원평가 기준에 피해구제 신청건수 대비 구제비율(합의율)을 반영하여 홈쇼핑의 적극적 피해구제 유도

4 청약철회 및 사후관리에 대한 고지 강화

- 청약철회·사후관리 관련 민원·분쟁 빈발분야는 중점심의를 실시하고, 반복위반사례는 심의규정에 반영해 재발방지

4 기대 효과

- 10조원 이상의 시장규모를 형성 중인 TV홈쇼핑 이용자 불편 해소
- 44.3%**에 불과한 피해구제 합의율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

* 피해구제 신청사건 중 환급, 배상, 계약해제 등 보상 처리된 사건 비율
** '15~'17년간 최근 3년간 매출액 상위 5개사 피해구제 합의율 평균

사례 13

교복 구매, 가격은 잡고 여학생도 바지선택 가능

■ 과 제 명_ 청년체감-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의 불편요인 개선 ■ 권고일자_ 2020. 7. 20.
■ 대상기관_ 17개 시·도 교육청 ■ 기관수용, 2021. 3. 31.(이행완료)

1 개 요

- 고가교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13.7월, 교육부) 및 학교주관구매제도('15학년도) 실시로 가격은 안정화되었으나, 학생·학부모 다수가 체감하는 불편요인들에 대해 개선 필요

2 문제점

1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단가 책정

- 품목별 금액비율 제출규정이 없어 추가구매가 많은 품목에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합리적 단가기준의 부재로 불공정 거래 해소유인에 한계

※ 여분의 와이셔츠나 바지를 구입하는데 단가가 비쌈(2020.4. 신문고)

2 품질이 낮은 교복에 대한 대응 미흡

- 학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부적절한 교복 사양서가 공고되거나, 기재된 사양과 납품 이후 실제 원단이 불일치하는 등 품질 위협요소 존재

※ 공동구매 교복 원단은 사포 같다고 할 정도로 수준 이하임(2019.6. 신문고)

3 교복 치수 측정 시 불편 유발

- 업체에서 교복 치수 측정 시 평일 3일간만 측정을 허용하는 등 촉박한 기간 부여, 특히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자녀와 동행이 곤란

4 품목 고정으로 바지교복 선택권 제한

- 교복 신청양식에 여학생 품목이 스커트로 고정되어 바지를 원하는 경우 불필요한 추가구매의 부담 발생

※ 여학생은 치마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고, 바지 전환 시 추가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2020.1. 신문고)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비용책정 방지

- 입찰 공고 시 제출사항으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규정하고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시 가격 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2 교복품질개선을 위한 조치 마련

- 교복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문가*를 포함해, 현행화 된 사양이 입찰공고에 반영하고, 납품 후 교복품질검사 대상학교 선정에 표본조사 실시

  ※ (Ex) 혼용률 및 섬유소재, 디자인, 성인지 감수성 등 필요한 분야

3 교복 치수 측정 시 충분한 기간 부여

- 교복의 치수 측정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문기간(예시 : 5일 이상)을 설정하고, 맞벌이 학부모를 고려해 측정기간에 주말 포함

4 신청양식 내 바지교복 선택권 부여

- 교복 신청양식 내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바지'로 명시해 교차선택 가능하도록 변경

4 기대 효과

- 교복선택 기준으로 합리적 가격 외 품질·디자인 및 성인지 감수성 등 다양한 선호도가 반영되도록 불편 개선

사례 14

들쑥날쑥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수강료 이제 그만

■ 과 제 명_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
■ 대상기관_ 경찰청
■ 권고일자_ 2021. 1. 25.
■ 기관수용, 2021. 12. 31.(이행 중)

1 개 요

-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국가로부터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위탁받아 이를 통해 높은 수강료 부과,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정책 시행
  ※ 연간 60여만 명이 자동차운전학원을 이용('19년 졸업생 : 617,587명)
- 이로 인해,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 및 수강료 조정으로 수강생의 부담 가중 등 소비자의 권리침해 및 불만 가중

2 문제점

1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의 불공정성

- 운전학원은 자동차 운전 검정수행 등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지역·학원 간 운전학원 수강료 및 검정료에 과도한 편차 발생
  ※ (검정료) 기능검정료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 2.2만원, 전문학원 4.3만원이고 도로주행 검정료의 경우 공단 2.5만원, 전문학원 5.5만원으로 2.2배 편차 발생
  ※ (지역별) 전남권역 학원 간에는 30만원, 충남 학원 간에는 22만원, 경북 학원 간에는 19.5만원의 편차 발생
  ※ (일반/전문학원) 경기북부 일반학원 수강료는 54만원이나 같은 권역 전문학원은 72만원의 편차 발생)
- 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 등을 과도하게 인하한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나, 과도하게 인상한 경우에는 조정 권한이 없음

2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검정료 환불규정의 부당성

- 검정료 환불규정과 교육에 대한 수강료 환불규정을 구분하지 않아, 검정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시간을 기준으로 환불하고 있어 다수의 민원 발생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범위 확대

- 운전학원이 과도한 수강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야기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조정권 마련

  ※ (비교) 학습과 기예를 가르치는 일반 학원의 경우, 과도한 수강료에 대해 관리관청인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음

2 조정요건의 불확정 개념 구체화

- 법률상 수강료 조정요건인 "과도한 수강료"는 불확정 개념에 해당되므로 시행령에 산정 기준 등 구체화

  – 물가상승률, 전년 대비 수강료 상승률, 원가산정 자료, 평균·적정 이윤율 및 입지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시 반영

3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검정료 환불규정 마련

- 검정료에 대한 환불은 검정실시 여부에 따라 반환하도록 환불규정 별도 마련

4 기대 효과

-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 조정제도 및 검정료 반환제도의 불공정성을 개선하여 연간 60만 여명에 이르는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면허취득 가능

사례 15

채용비리 연루자에 더 이상의 관용없다

■ 과 제 명_ 기타 공직유관단체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방안 ■ 권고일자_ 2018. 6. 25.
■ 대상기관_ 255개 공직유관단체 및 감독기관 ■ 기관수용, 2018. 12. 31.(이행완료)

1 개 요

-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권익위·기재부·행안부를 중심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 실시(2017. 10월~12월)
- 채용비리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회악으로서, 일회성 점검이 아닌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2 문제점

1 채용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 제재 근거 미흡

-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다수가 채용비리 연루 직원의 업무배제 · 면직,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미규정
  ※ 수사의뢰(징계요구)된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에 관한 규정 미비로 업무배제 불가
-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규정하지 않거나, 금품수수·공금 횡령의 징계시효(5년)보다 단기로 규정하는 등 채용비리 제재에 허점 발생
  ※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기관 다수

2 채용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내부점검체계 미흡

- 채용정보 공개(공시) 저조, 서류·면접과정 외부 평가 위원 참여 부족, 사후 점수조작 등 채용과정 투명성 미흡
  ※ 과거 일부부처 중심으로 채용비리 실태점검을 한 바 있으나, 일회성 점검에 그침

3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 절차 부재

- 대부분의 기타 공직유관단체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신청, 구제 절차 등 가이드라인 부재
  ※ '18. 4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13개 공직유관단체 중 2개 기관만이 채용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운영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제도화

- 기관별 채용 관련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 채용비리 연루 임직원 직무정지(업무배제) 및 명단 공개
-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연장(5년)하고, 부정합격자에 대한 채용취소 근거 및 응시자격 제한 명문화

2 채용과정 등에 대한 내 · 외부 통제 강화

- 전형(서류-필기-면접)별 시험위원 구성·운영의 공정성 확보 및 기관 내·외부 감사 기능 강화

3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 기관별로 피해자 특정 가능 시, 적극적 구제책 마련 및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 등 피해자 구제 강화

4 기대 효과

- 공공기관의 불공정 채용으로 야기된 인사병폐 개선 및 공정채용 원칙 확립을 통해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 달성에 기여

사례 16

지자체 퇴직자, 해외여행·황금열쇠 제공금지

■ 과 제 명_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관행 개선
■ 대상기관_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권고일자_ 2021. 4. 12. ■ 기관수용, 2021. 12. 31.(이행 중)

1 개 요

- 권익위는 지난 '15년 지자체 장기근속·퇴직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수준의 국외연수와 기념금품 등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권고
- '20년 이행점검결과, 다수의 지자체에서 주요 권고사항의 이행이 여전히 미흡한 사실 확인

※ 최근 4년간('16~'19) 234개(95.1%) 지자체에서 퇴직예정자 부부 등에게 국외연수 및 황금열쇠 지급 명목 등으로 예산 781억을 집행했고, 지급근거가 없는 사례 다수 확인

2 문제점

1 과도한 지원 지속 및 일부 기관(대상자)에 지원 편중

-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귀금속 등 제공 관행 지속
- 전체 지원규모 중 일부 지자체 중심으로 과다 집행

※ 광역자치단체의 국내·외연수와 기념금품 등 지원 규모는 총 123억여 원이며 지원액 상위 5개 기관이 전체 지원예산의 63%를 차지(77억여 원)

※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관의 총 지원 규모는 658억여 원이며 지원액 상위 10개 기관이 전체 지원 예산의 26%를 차지(170억여 원)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장기근속자 등에게 국내·외 연수 및 고가의 기념금품 지원

※ '20년 기준 재정자립도 10% 미만 46개 지자체 중 93.5%인 43개 지자체가 장기근속·퇴직(예정)자와 가족 5,154명에게 72억여 원 예산 집행

2 지원제도 편법 운영 및 예산집행 부적정

- 상당수 지자체가 장기근속과 퇴직(예정)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공적 평가 없이 대상자 전원을 일괄 포상하고 이를 근거로 지원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과도한 지원 중단

- 장기근속 · 퇴직(예정)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국내 · 외 연수 및 기념금품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

  ※ 과도한 지원 해소를 위해 단체협상 등이 필요한 기관은 공직자 상호간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

  ※ 국가공무원은 장기근속·퇴직을 이유로 국내·외 연수와 기념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

2 예산편성 기준 명확화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장기근속·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금지 명문화

  ※ 단순한 장기근속·퇴직이 아닌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 가능하도록 개선

- 일률적 지원 목적 예산집행의 축소 노력 및 집행관리 철저, 집행내역의 주기적 공개
- 상급기관 감사 및 자체감사를 통한 주기적 점검

4 기대 효과

-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집행 방지 시, 연간 약 19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

사례 17

공공기관 회의참석수당, 나눠먹기식 챙기기 이제 그만

■ 과 제 명_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 ■ 권고일자_ 2018. 12. 17.
■ 대상기관_ 477개 공공기관 ■ 기관수용, 2019. 6. 30.(이행완료)

1 개 요

- 공무원 및 다수 공공기관 임직원은 관련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기관 주관 회의 및 심사 등에 참여해도 기관업무 수행이라는 점에서 별도 수당 미지급

  ※ 공무원은 담당업무와 그 외 소속된 기관의 사무와 관련한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 참석·심사 등 명목의 수당 지급 불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일부 공공기관이 통상적인 기관 자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보수 외 추가로 수당을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발생

2 문제점

1 기관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관행적 수당 지급

- 일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은 기관 내 회의참석이나 심사 등에 관여 시 보수 외 추가 수당 지급 관행 만연

  ※ 총 80개 기관을 임의 선정해 2017년 1년간 예산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4개 기관에서 기관당 평균 485명에게 73,166천원(1인 평균 150천원) 지급 확인

- 주요 수당지급 유형으로 '업무 직접담당 포함', '당초 계획에 없는 지급대상 추가', '직원을 외부위원 간주', '전문성 활용 목적' 등 다양

2 지급기준을 임의로 해석·적용하는 등 자의적 집행

- 불명확한 기준을 사용하거나 예외적 지급사유를 일반적인 것처럼 운용하는 등 지급기준 임의 적용

  ※ (불명확한 규정운영) '지급대상에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공단 이외의 자'로 규정해 놓고 직무담당 아닌 임직원에 지급 가능한 것으로 자의적 해석

  ※ (예외규정의 일반적 적용) '원칙적으로 미지급하나 4시간 이상 과중업무 또는 중대한 사후책임 있는 경우 지급'으로 정한 후 예외를 일반 적용해 지급 등

- 타 기관사례를 참고해 새롭게 지급하거나 전문성 활용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과다 지급하는 등 예산 집행의 타당성 결여

  ※ 특정 공기업은 공무원 수당제한을 고려 회의참석수당은 불지급하되 타 공기업 사례를 참작해 업체 선정 위원회 시 사전검토 및 평가책임 수당은 지급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소속 임직원의 회의참석·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 각급 공공기관은 기관업무 수행 시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2 수당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 법령에 근거하거나 기관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4 기대 효과

- 임직원의 불필요한 각종 회의·심사 등 참여 동기 최소화 및 청탁금지법 위반소지 해소로 건전한 직장문화 향상에 기여
- 일부 공공기관이 보수를 지급하고 별도 수당까지 지급하는 이중지급 행위를 차단하여 연간 약 44억원의 공공재정 누수 방지

※ 총 80개 공공기관의 '17년 1년간 실태조사에서 총 7,300만원 수당 지급, 이를 전체 공직유관단체 477개로 환산해 보면 약 44억원(7,300만원×6)

사례 18

학생지도비용, 행정직원에 대한 지급 제한한다

■ 과 제 명_ 국·공립대학 학생지도비용 운영 투명성 제고 ■ 권고일자_ 21. 9. 6.
■ 대상기관_ 교육부 ■ 기관수용, 2022. 12. 31.(이행완료예정)

1 개 요

- '15. 3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급여성으로 지급되던 '기성회 수당'이 폐지되고, 실제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 운영 중

  ※ '20년 기준 12개 국·공립대에서 직원 4,908명에게 학생지도 비용 31,186백만원 지급

- 매년 관례적으로 국립대학 교직원들이 허위 또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실적을 제출하여 학생지도 비용을 편취하는 사례 발생

2 문제점

1 계획수립 및 집행단계 학생참여 배제

- 학생 지원사업임에도 학생과 무관하게 교직원 개인이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교직원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운영
- 참여학생 만족도 조사 등 절차가 없고, 실제 운영실적에 대한 학생 확인절차 미운영

  ※ 허위자료 작성, 증빙자료 미비, 실적 부풀리기 등을 통한 부당 수령 관행화

2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까지 학생지도 비용 지급

- 상담·행사지도 등 본래 업무를 실적으로 인정해 학생지도비 지급

3 부당수령 대비 내부 감시 체계 미흡

- 내부 구성원만 참여하는 형식적 심사 및 실제 활동시간 등 기본사항 미확인
- 허위·부당 수령 등 법령위반에 대한 신고 등 내부 통제장치 부재

4 지급단가, 한도액 등 학교 간 편차 발생

- 기준, 단가에 대한 교육부의 사전안내·승인이 없어 대학별 인정시간, 횟수 등 실적인정 기준이 다르고 지급단가 제각각
- 대학의 자율 운영에 의존, 관행적인 부당수령에 대응 한계

  ※ 제도운영 총괄 및 부정수급 감시 의무가 있는 간부도 지급대상에 포함(자율통제 미비)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교원 외 학생지도비용 지급 대상 축소

- 공무원 및 과장급 이상 직원 대상 학생지도 비용 운영 금지

  ※ (정책제안) 전직원 대상 학생지도비용 지급제도 폐지(필요시 대학회계 직원에 한해 일정수당 지급 등 운영방식 전환 검토)

2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참여 확대

- 심사위원회 구성에 일정 비율 이상 학생참여 의무화
- 계획 및 사후집행결과 학생 참여 및 집행결과에 대한 학생의견 수렴

3 불법·부당수령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

-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등 계획·실적 심사 과정 투명성 확보
- 증빙자료 확대, 학생지도 비용 공개범위·내용·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

4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 지급항목, 단가, 1인당 한도액 등 구체적인 지급기준 마련

4 기대 효과

- 학생지도 비용의 허위·부당 수령 근절을 위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국·공립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

사례 19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사전검증 강화한다

■ 과 제 명_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 권고일자_ 2021. 8. 9.
■ 대상기관_ 행정안전부,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 ■ 기관수용, 2022. 12. 31.(이행완료예정)

1 개 요

- 특별조정교부금은 15개 광역시·도가 관내 226개 시·군·구의 재정격차 해소 및 특별한 재정수요 충당을 위해 교부*

  * 코로나19·대형화재·홍수가뭄 등 재난재해 대응,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 수요 해결 및 시·도 시책사업 추진 등에 사용되며 연간 약 1조 4,255억원('20년 기준) 규모

  - 90개 시·군·구 실태조사('21.1월~6월) 결과, 약 260억 원 부당 집행 적발

    ※ 지자체 공무원 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로 20억여 원, 민간 아파트 개보수, 개인·법인·단체 소유상가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원 집행 등

  - 또한, 전국 41개 시·군·구(18.1%)에서 특조금 534억 1,523만원을 '성립 전 사용'하여 법령위반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 사실 확인

2 문제점

1 시·군·구의 사업 신청 단계에서의 검증장치 미흡

- 시·군·구의 사업신청 과정에서 금지사업(민간보조 등) 해당 여부, 사전절차(투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 이행 여부 등 검토가 부실하여 부적정 사업 양산

2 외부 참여장치 부재 및 상이한 감액·반환기준

- 민간전문가의 심사·선정 검토 참여가 미흡하고, 시·도별 감액·반환기준이 상이하여 제재의 형평성·일관성 저해

3 교부사업 사후 점검 및 관리 부실

- 추진현황, 사업조건 이행 및 집행잔액 관리 등 사후점검·관리 부실

4 부적정한 교부금 처리방식으로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

- 연말 마지막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편성·집행하지 않고 미리 집행하여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

5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사업 사전 검증절차 강화

- 사전 검증사항 점검기준 도입·운영, 예산 검토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등

2 외부 전문가 참여장치 마련 및 반환·감액 기준 정비

- 외부인이 참여하는 '(가칭)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기준 검토·심의 강화 및 위법·부당 편성·집행 시 반환·감액기준의 구체화

3 교부사업 집행현황 점검 및 관리 강화

- 교부사업 집행현황 통합관리 및 집행잔액 재투자·반납 점검관리 강화

4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 처리기준 구체화

- 법령 위반 및 지방의회 예산 심의권한 침해 소지 있는 성립 전 사용 금지

※ 시·도에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미리 교부결정하고 특조금을 교부한 경우 시·군·구는 교부금을 당해연도 세입조치하고,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 사용 금지

5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법적근거 명확화

- 시·도 조례에 정보공개 범위 확대(사업대상·위치·항목·기간 등 추가 공개) 규정 및 「지방재정법」에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4 기대 효과

- 매년 약 1.4조원 규모 특조금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부적정 집행사례 방지로 연간 약 650억원의 재정누수 방지 예상

※ 위법·부당 집행사례를 226개 시·군·구로 환산 시 650억 9,529만원 (650억 9,529만원 = 259억 2,290만원×226개/90개 시·군·구)
⇒ 연간 약 650.9억 원의 부적정 집행 차단

사례 20

비위행위자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한다

■ 과 제 명_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관행 개선
■ 권고일자_ 2020. 10. 12.
■ 대상기관_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
■ 기관수용, 2021. 4. 30.(이행 중)

1 개 요

-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들이 비위행위로 인해 중징계 처분 등을 받아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
- 또한,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 기간에 포함된 직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여 방만한 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 제기

2 문제점

1 중대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자에 대해 성과급 지급

-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의 경우 징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기준이 없어, 각종 중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사례 빈발

  * 업무상 횡령·금품(향응)수수·음주·성폭력 등

  ※ 공무원과 달리 중징계처분을 받아도 근무한 일수에 비례해서 성과급을 받거나,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해도 지급하는 문제점 노출

- 특히, 개인별 업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이 업무관련 비위 행위자에게 지급되어 성과급 제도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발생

2 징계자에 대해서도 명예퇴직 허용

- 많은 공직유관단체가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 제한규정이 없어 부적절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이루어지는 실정

  ※ 공무원의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는 명예퇴직 안 됨

- 향응수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바로 명예퇴직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불합리한 사례 발생

  ※ 채용업무 부당처리,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2회에 걸쳐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4개월 후 명예퇴직을 승인하고 수당 약 1억 2천만원 지급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

-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 마련
- 공무원 성과급 지급금지 규정을 준용해서 중징계 처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게 성과급 지급 금지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총 224명)결과, 업무상 횡령 · 금품수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8.8%(199명)를 차지

2 승진 제한기간 중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마련

※ 국민생각함 설문결과, 응답자의 88.8%(199명)이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답변

4 기대 효과

- 공직유관단체의 성과급 및 명예퇴직 제도 개선 시, 1,352개 전체 공직유관단체로 산정할 경우 230억원* 이상 재정절감 추정

※ 실태조사 대상 공직유관단체 840개 기관 기준, 약 143억원 부당 지급

* 230억원 = 1,352개 기관 × 143억원 / 840개 기관

사례 21

공공기관의 임대사업, 정보공개로 부정청탁 예방한다

■ 과 제 명_ 공직유관단체 임대수익사업 운영체계 투명성 제고 ■ 권고일자_ 2018. 2. 5.
■ 대상기관_ 한국철도공사 등 13개 공직유관단체 ■ 기관수용, 2018. 7. 31.(이행완료)

1 개 요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분야 공직유관단체가 운영하는 상가임대 등의 수익사업에서 임대사업자 선정 및 운영과정의 청탁관행 등 부패유발 요인 상존

2 문제점

1 임대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부족

- 토지 · 건물 등의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 낙찰자 등을 투명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비전자적 방식에 의존

  ※ 근거규정 미비로 비전자적 방식(현장접수)으로 임대업체를 모집 · 선정함에 따라 업무담당자와 금품 · 향응 유착 우려

- 계약 연장 및 조건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이 임대업체 선정 후, 계약만료 후 근거규정 없이 재계약 여부를 임의 결정하는 등 재량권 남용

2 재산관리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미흡

- 재산관리심의위원회가 대부분 없거나, 내부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심사결과의 불공정 및 특혜의혹 제기
- 재산의 취득 · 처분, 임대 계약연장, 임대료 결정(무상), 수의계약 등을 심의위원회 심사 없이 내부적으로 결정

3 임대시설물 정보제공 미흡 및 형식적 관리 · 감독

- 시설물 임대 현황이 비공개 또는 일부만 공개되어 있어 위법한 임차권 양도, 부적정한 임대료 등 불법행위 신고 및 예방에 한계
- 임대시설물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미비로 관리 · 감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위법한 임차권 양도 등의 부당거래 발생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임대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임대사업 입찰공고, 개찰, 낙찰 시 정보처리장치(온-비드 시스템 등) 이용 의무화 규정 마련 및 시스템 구축
- 임대사업 입찰공고 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연장 및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2 임대사업 운영의 공정성 확보

-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위원을 과반수로 위촉
- 임대 계약기간 연장, 계약해지 등 중요 사안은 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 마련

3 임대정보 공개 등 부정청탁 예방기능 강화

- 임대물건에 대한 계약기간, 계약금액 등의 현황의 홈페이지 공개 등 시스템 개선 및 임대시설물에 대한 주기적 점검 실시 등

4 기대 효과

- 연간 약 2조원 규모의 도로, 철도, 항만, 항공 분야 공직유관단체 임대 수익사업의 투명성 제고로 임대사업자 권리 보호 강화 및 수익 증진 기반 마련

사례 22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참여기준 강화한다

■ 과 제 명_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투명성 제고 ■ 권고일자_ 21. 7. 5.
■ 대상기관_ 보건복지부 ■ 기관수용, 2022. 12. 31.(이행완료 예정)

1 개 요

- 사회복지시설의 지자체 설치 및 민간위탁 운영 방식은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방식*이나, 위탁관리·운영관련 다양한 문제와 논란 발생

  * '19년 지자체 설치 사회복지시설 7,040개 중 6,307개(89.6%)가 민간위탁방식 운영

2 문제점

1 불명확한 기준으로 열악한 법인의 수탁운영 선정

- 사회복지법인 허가 시 기본재산 출연 기준이 불명확하여 특정법인에 유리하게 임의로 변경 가능
- 수탁자 선정심의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부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의 배점을 달리하나 대부분 구분 없이 선정

  ※ 설립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원법인 설립 후 사회복지법인과 동등하게 복지시설 수탁

2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수탁자 선정과정

- 선정·배점기준이 불명확하고, 사전 비공개로 불공정한 심사 소지

  ※ 243개 지자체 중 207개(85.2%) 지자체가 관련 조례에 사전 공개 관련 사항 미규정
- 시설 위·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이 불투명하고 심의내용 비공개 등 선정과정이 불공정

  ※ 외부위원의 자격과 비율 미규정, 이해충돌방지규정 부재, 이의신청 절차 미운영 등
- 재계약 근거 규정에 따라 공모 없이 시설 장기위탁 관행화

3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 특혜채용 관행화

-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 심의를 통한 특정인 시설장 채용
- 공고기간 단축, 비공개 심사, 특정인력 추천 등 불공정 채용 관행화

4 종교 강요, 불법자금 조성, 지역 공무원과 유착 등 각종 비리 만연

- 인사권을 명분으로 시설 종사자 등에게 종교 행위 강요
- 사회복지시설 인력 채용 등 운영 과정에 관계공무원이 참여·권한 행사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법인 참여기준 및 전문성 강화

- 사회복지법인 허가 시 기본재산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근거 마련
- 위·수탁 심사 시 전문성 있는 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 시설 위·수탁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외부위원 자격요건 명시, 참여비율 개선, 이해충돌방지, 심의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마련
- 재계약 횟수를 조례로 제한하고 재계약 전 운영성과 평가 실시

3 인력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

- 시설장 등의 자격요건 강화 및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4 법인 부당행위 관리·감독 강화, 공무원 재취업 기준 강화 등

- 공개채용 과정에서 종교 관련 개인정보 요청 지양 근거 마련
- 재취업 금지대상에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일반공무원을 포함하고, 적용범위를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 등

4 기대 효과

- 6,307개 지자체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복지서비스의 수준 제고 및 시설종사자 근무여건 향상

사례 23

공공기관의 소송비용 미회수 방치하지 말라

■ 과 제 명_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 대상기관_ 공공기관
■ 권고일자_ 2021. 10. 25.
■ 기관수용, 2022. 5. 31.(이행완료 예정)

1 개 요

- 공공기관이 승소 후 소송비용을 회수 없이 방치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예산누수 및 공직자 직무유기 의혹의 부패신고 등 문제제기가 지속됨
- 또한, 미회수는 명시적 예외사유로 제한해야 함에도, 기관의 위신 고려·민원회피 등 주관적 판단으로 방치·지연 및 관행적 채권 포기 만연함

2 문제점

1 소송비용회수 내부규정 미흡 및 예산 누수

- 소송업무 및 승소 후 비용 회수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담당자가 소송비용을 임의 포기하는 등 미회수·방치 관행 반복

  ※ 총 351개 공공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약 5,900여 건, 약 369억원 미회수 14%(48개) 기관은 내부규정 자체가 없고, 17%(59개) 기관은 소송비용회수 근거가 없으며, 예외사유 규정 없이 미회수하는 기관도 31%(110개)

- 공공기관의 소송비용 미회수로 인해 재정적 손실 및 예산누수 증가

  ※ 기관별 평균 미회수 소송금액 및 소송건수는 각각 '16년 970여만원·1.8건에서 '20년 3,230여만원·6.2건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

2 임의적 재량 행사 및 온정적 처벌 관행

- 규정이 없는 경우 이미지 훼손 우려·부서 업무과중 등 자의적 명목으로, 미회수사유를 규정한 경우 확대해석을 통해 미회수 빈발

  ※ 351개 공공기관 실태조사 결과, 예외사유 규정 없이 미회수하는 기관은 31%(110개)

- 미회수를 단순과오 취급 등 회수업무의 안이한 처리경향 및 온정적이고 관대한 처벌 관행

  ※ 소송비용 1,430여만원을 소송대리인 개인계좌로 수령, 소송기록 분실로 미회수 등 다양한 부적정 처리사례 발생에도, 대부분 업무착오나 민법상 채권소멸시효(10년) 미도래 등 명목으로 신분상 조치 미실시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기관별 세부규정 정비

- 국가·행정소송 등 유형별 소송사무 절차·기준 등 내부규정 마련
- 착수·처리기한 설정 및 관계자 통보절차 등 비용 회수방안 구체화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총 819명)결과, 회수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이고, 회수관련조항을 마련·준수해야한다는 의견이 96%(786명)를 차지

2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사유 구체화

-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객관적·구체적인 소송비용 회수 예외규정(미회수 사유) 마련

※ 국민생각함 설문결과, 응답자 87.1%(713명)이 예외규정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답변

4 기대 효과

- 소송비용을 방치 없이 신속히 회수할 경우, 1,400여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산정 시 재정적으로 1천억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추정

※ 공공기관 중 표본 추출된 351개 기관 기준으로, 약 369억원 미회수

* 1,472억원 = 1,400개 기관 * 369억원 / 351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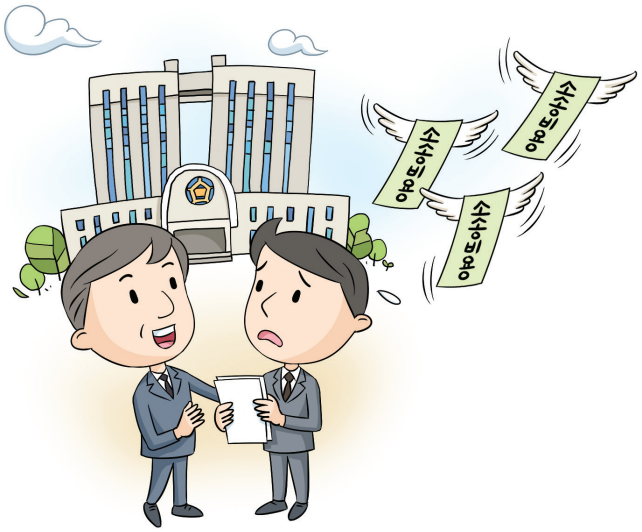

사례 24 농어민 위한 면세유 혜택, 농어민에게 돌아가도록

■ 과 제 명_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관리의 사각지대 해소 ■ 권고일자_ 2021. 5. 24.
■ 대상기관_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농·수협, 산림조합 ■ 기관수용, 2023. 5. 31.(이행완료 예정)

1 개 요

- 농·임·어업인(농어민 등)에 제공되는 면세유는 그 간 농어민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농·임·어업 정상화에 기여*

  * 면세유를 통한 지원규모(억원) : 13,490('17년) → 13,618('18년) → 13,865('19년)

- 그러나, 면세혜택이 농어민 등에게 돌아가지 않고, 공급·관리가 불공정하거나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등 면세유 유통·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2 문제점

1 면세유 부정 판매

- 면세유 판매자(주유소 등)가 면세액을 허위로 표시, 농어민 등에게 돌아가야 할 면세혜택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등 면세유 부정 판매 관행

  ※ ○○주유소는 실제 면세액(870원 수준)과 달리 휘발유의 면세액이 459원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20. 8월, 권익위 실태조사)

- 면세액 허위표시 및 부정 판매 방지를 위한 지자체 관리·감독 근거 미흡

2 부적정한 면세유 지급 통제 미흡

- 낚시어선에 대한 과도한 면세유 지급으로 제도 도입 취지 훼손

  ※ '어한기 영세 어민의 소득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벗어나 사실상 레저영업에 면세혜택을 제공하여 공급량이 '13년 8,791KL에서 '20년 54,655KL로 622% 급증

- 어업정지처분 기간 중인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사례 빈발

3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 미흡

- 면세유 관리기관이 면세유 공급명세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면세유 관리 투명성 및 접근성이 저하되고, 개인정보 침해사례도 발생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 및 관리·감독 근거 명확화

- 유종별 면세액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
- 면세유 판매자의 '면세액 표시 적정성'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

2 부적정한 면세유 지급 통제 강화

- 낚시어선에 대한 면세유 지급기준 강화
- 어업정지처분 선박에 대한 면세유 지급 통제장치 마련

3 면세유 관리현황 공개제도 정비

- 3개 면세유 관리기관(농·수협, 산림조합) 중앙회를 공개 주체로 명시하고, 공개항목을 명확히 규정
- 면세유 관리기관 중앙회가 소속 조합에 공개 관련 지침 제공

4 기대 효과

- 면세유 판매자에 대한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연 5.5억 리터*에 상당하는 면세유 혜택이 지급대상 농업인(1,019천 명)에게 올바로 전달

  ※ '19년 민간 주유소를 통해 농민들에게 공급된 면세유 총량은 5.5억 리터로, 전체 면세 지원액 규모는 2,726억원 수준

- 어업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에 대한 부당한 면세유 지급 차단

  ※ 연간 단속 건수 추이 : '18년 1,679건 → '19년 1,694건 → '20년 1,953건

사례 25

미세먼지, 국민의 아이디어로 잡는다

■ 과 제 명_ '미세먼지' 민원분석을 활용한 제도개선
■ 대상기관_ 환경부·국토부·행안부 등
■ 권고일자_ 2019. 6. 10.
■ 기관수용, 2020. 12. 31.(이행완료)

1 개 요

- 미세먼지 확산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 되면서, 정부는 2017. 9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별 대응 노력
- 그러나, 실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끊임없이 분석·진단하는 피드백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2 문제점 및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노약자 대상 미세먼지대책 강화]

1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미세먼지 건강보호대책 마련(행안부 등 67개 기관)

- 노약자들이 공공사업 참여 시 야외근로 지속 등 건강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경보단계별 마스크 지급, 근무시간 단축·휴무 등 안전방안 이행

2 어린이집 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환경부)

-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만 실내공기질 관리의무가 있는 실정으로, 430㎡ 미만(86%)도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대상에 포함

  ※ 영세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규모를 고려, 단계적으로 적용대상 확대

3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 마련(교육부, 복지부, 환경부)

- 유지관리 곤란 등을 이유로 공기정화설비 활용이 저조한 학교·사회복지시설·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주기적 환기, 필터 세척·교체, 오염센서 등 공기정화설비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보급

[친환경차 보급 및 지원 관련 미비점 보완]

1 조기폐차 지원을 친환경차 구매로 연계 확대(환경부)

-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역이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구매차종에 따른 보조금 차등화 등 친환경차 구매연계 확대

  ※ 보조금만 받고 노후차를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 경유화물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양도한 후 전기화물차 보조금과 신규번호판 발급 등

2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의 해외 중고판매 개선(환경부)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차를 의무운행기간(2년)만 지나면 해외 판매로 차액을 편취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배터리 반납, 잔존가치 금전 납부 등 개선

3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기한 연장(국토부)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50%)기한 연장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산 지원

[지역별·상황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실효성 제고]

1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한 대기관리권역 지정 확대(환경부)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보다 대기질이 나쁜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여 대기관리권역 추가 지정

2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시 거주기간 요건 폐지(환경부)

- 거주기간 제한으로 주소이전 시 보조금 지원불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계가 없는 대기오염의 특성을 고려해 2년 이상 거주요건 폐지

3 조기폐차 지원차량 폐차장 입고 시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면제(국토부)

- 조기폐차처리기간 중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인한 민원이 가중되고 있어, 조기폐차 지원차량 폐차장 입고 시 의무 면제

4 화목보일러 관리지침 마련(환경부, 산림청, 지자체)

- 폐목재의 연료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민원에 대응하여 화목보일러 연료기준, 연통관리 등 구체적 지침 마련 등 법적기준 정비

3 기대 효과

- 깨끗한 공기 안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당연한 권리 회복 및 미세먼지로부터의 피해 최소화

사례 26

지자체마다 상이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통일

■ 과 제 명_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 권고일자_ 2021. 9. 9.
■ 대상기관_ 환경부, 국토교통부, 17개 국·공립대학
■ 기관수용, 2022. 2. 28.(이행 중)

1 개 요

-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탄소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 모색
- 전기·수소차 확산 정책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제도적 장치 미비로 전기·수소차 구매·운행에 따른 이용자들의 고충·불편 유발

2 문제점

1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거주요건 기준일 지자체별 상이

-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공고시 거주기간 산정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마다 그 기준일이 상이, 보조금 지급 사각지대 발생

※ 지자체마다 거주요건 기준일을 사업 공고일 또는 구매 지원신청일로 달리 정함

2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일부 감면

-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시 하이패스단말기를 장착한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만 통행료 감면, 일반차로 이용자 감면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인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등은 하이패스차로 및 일반차로 모두 통행료 감면

3 국·공립대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미감면

- 공적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학에서 전기·수소차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정기권 이용자 등 일부만 감면하여 이용자의 불편 야기

※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국·공립대학(26개) 중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11개) 일부 감면하는 대학(6개)은 17개로 65.4% 차지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신청요건 사각지대 해소

- 전기·수소차 보조금 신청자격의 거주요건 기준일을 구매 지원신청일 등으로 통일하여 보조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2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개선

- 전기·수소차는 경차,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등과 같이 하이패스차로 뿐만 아니라 일반차로에서도 통행료 감면

3 국·공립대학 전기·수소차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

- 전기·수소차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않거나 일부 대상만 감면하는 국·공립대학 전면적으로 감면제도 운영

4 기대 효과

-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보완을 통해 친환경차 보급 확대 불편 해소 및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

사례 27

소규모 관급공사, 무리한 저가·과소 설계 관행 개선

■ 과 제 명_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
■ 권고일자_ 2021. 2. 8.
■ 대상기관_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 기관수용, 2022. 12. 31.(이행완료 예정)

1 개 요

- 관급공사의 불공정(저가계약 등) 입찰 행위는 입찰참가자의 권리보호 이익 제한 및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을 저하
-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급공사 계약 과정의 불공정 요인 상존

2 문제점

1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과소 설계 관행 빈번

- 소규모 관급공사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저가·과소 산정하여 입찰함으로써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손해와 관급공사 부실 초래
- 소규모 관급 공사의 기초금액의 공개대상·범위 설정 부재로 중소건설업체의 알권리 및 발주기관의 계약행정 투명성 확보 저해

2 건설공사계약 시 계약상대자 간 인지세 부담방식 불공정

- 「인지세법」상 계약당사자 간 일정 비율이 아닌, 연대 납부하도록 규정하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납부 의무의 전가 관행 빈번

※ (발주자 · 도급자) 발주자(공기업, 준정부기관 등)가 자신이 부담할 인지세를 도급자에게 전가, (도급자 · 하도급자) 하도급공사 계약시에도 도급자(대기업)가 부담해야할 인지세를 하도급자(중소기업)에게 전가

3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불합리한 공제

- 공사원가계산서의 '재료비' 항목에 고재처리비를 일괄 공제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비 등 도급액이 감액되어 공사비 전체의 왜곡으로 계약상대방(중소건설업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 빈발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과소 설계 관행 개선

- 지역 여건 등이 고려된 발주기관별 설계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 충청남도·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타당성·적정성 용역 등을 거쳐 객관성을 확보한 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시행 중
- 발주기관의 저가·과소 설계 및 중소건설업체의 무리한 입찰 참여 방지 등 알권리 보장(이의신청 등)을 위해 공개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2 건설공사계약 시 계약상대자 간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 도급 · 하도급계약 시 계약당사자 간 인지세를 균등 · 공평하게 부담(일정 비율 등)하도록 '계약 집행기준'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 (행정안전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반조건」 (국토교통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3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고재처리비 합리적 공제

- 시공에 직접 소요 · 투입되는 도급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철근 · 철골, 강관 등 할증수량)에서 발생하는 고재에 한하여 재료비에서 공제
  ※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의 공사 중 발생한 경제성 있는 고재(암석, 고철, 폐철근, 임목 등)는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않음

4 기대 효과

- 소규모 관급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59,273개('19년 기준) 중소건설업체의 부담과 손해 발생 예방

사례 28

세제혜택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손본다

■ 과 제 명_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 ■ 권고일자_ 2021. 11. 22.
■ 대상기관_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 기관수용, 2022. 12. 31.(이행완료 예정)

1 개 요

-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더 비싼 역전현상이 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2 문제점

1 골프대중화 명목으로 제공된 세제혜택 효과 미흡

- 대중골프장의 세제혜택이 이용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사업자이익만 증가시키고, 요금 역전현상은 회원제에서 대중골프장으로 전환 시 심화
  ※ 총 512개(회원제 158개, 대중 354개) 골프장 평균 이용요금은 수도권, 충청·호남권의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 간 차이가 개별소비세 금액(약 2만원)에도 미치지 않음
  ※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한 경우 대부분 지역의 이용요금 차이가 개별소비세 금액(21,120원)에 미달, 충청권의 경우 대중골프장이 주중 6,000원, 주말 20,000원 더 비쌈

2 대중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 회원권 판매, 예약 우선권 부여, 유사회원 모집 등 위법행위*나 회원제·대중골프장 동시 운영 중 회원제 이용자의 대중골프장 사용 등 빈발
  ※ '20.10~11월 문체부 및 지자체 합동조사 결과 위법행위 11건 적발

3 대중골프장의 불공정한 서비스 강요 및 폭리행위

-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약 80% 이상의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식당 등 부대서비스 이용의무 부과
  ※ 512개 골프장 중 이용자에게 경기보조원 이용의무를 부과하는 골프장은 84%(434개)
- 외부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음식물 등을 비싼 가격으로 판매·폭리 취득
  ※ 골프장에서 시중 판매가 1,000원대인 막걸리 1병을 12,000원, 떡볶이 등 간식을 36,000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득('21.10월 문체위 국정감사)

4 대중골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미흡

-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변화추이, 이용자수 등 주요 현황 파악 미흡
- 편법운영에 대한 명시적 금지 부재 및 제재규정 미흡 등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현황 관리 강화

- 감독기관의 골프장 이용요금 등 현황 관리 근거 마련
  ※ 이용요금, 이용자 현황 등 중요 사항이 조사·보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의무 보고사항 확대

2 대중골프장 이용요금 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정책제안)

- 사실상 회원제 운영 대중골프장의 경우 세제혜택 미부여
- 각 지자체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용요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이용요금에 반영

3 대중골프장의 사실상 회원제 운영에 대한 감독 강화

-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금지 및 위반시 제재규정 구체화
-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점검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감독기관의 대중골프장 점검 권한 명시, 점검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4 골프장의 불공정한 서비스 강요 및 폭리행위 제한

-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으로 경기보조원, 식당 이용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사업자의 폭리 행위에 대한 자발적 개선 유도
  ※ 식당, 그늘집 등 부대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4 기대 효과

- 대중골프장 세제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고 대중골프장의 위법·부당행위가 개선되어 골프 대중화에 기여
  ※ 총 354개 대중골프장 세금혜택 연 1조원 이상
  (개별소비세 6,300억 원, 재산세 5,700억 원 등)

사례 29

기술계고 졸업자, 경력 경쟁기회 확대한다

■ 과 제 명_ 채용 과정 및 자격 인정의 공정성 제고 ■ 권고일자_ 2020. 6. 8.
■ 대상기관_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 기관수용, 2020. 12. 31.(이행 중)

1 개 요

- 채용 우선순위나 자격 부여 기준을 규정한 법령 등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요인 상존

2 문제점

1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력경쟁 공직 임용 응시기회 차별

-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 대상 지역인재 채용 시, 법령(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상 졸업 후 일정 기간 경과자의 응시를 제한
  ※ 국가 지역인재는 졸업 후 1년 내, 제주 지방 지역인재는 졸업 후 3년 내)
- 반면, 경력경쟁임용시험 시 응시자격에 대한 충분한 행정예고 및 법령·조례 등 법령상 근거 없이 채용계획 공고만으로 일률적 제한
  ※ (~2020년) 졸업자 → (2021년~)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

2 전문고등학교 졸업자의 선박검사원 응시자격 제한

- 검사업무와 밀접한 해기사 면허 취득 이후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음에도 고졸자는 학력 제한 등으로 선박검사원 응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응시자격 : 대학·전문대학 졸업 이후 경력자, 선박검사관 경력자, 관련분야 기술사 취득자, 관련분야 기사 등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3~6년 이상 경력자

3 환경미화원 채용·정년 운영 불합리

-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재해 시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예우가 제공됨에도, 상당수의 지자체에서 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 혜택 제공
  ※ 정년퇴직 환경미화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등 처우 개선 및 경쟁률이 높은 현실 등에 비추어 공정성 침해
- 약칭 「고령자고용법」 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나, 일부 지자체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조례에 60세 미만으로 규정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력경쟁 공직 임용 응시기회 확대

-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충분한 행정예고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이 정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 제공 또는 인사규칙 등 근거 마련

  ※ (지역별 사정) 경쟁률, 기술계 고교수, 모집 직렬별 학과의 졸업자 수 등

2 전문고등학교 졸업자의 선박검사원 응시자격 제한 개선

- 해기사면허 취득 등 일정 요건을 구비한 해양·수산계 전문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하여도 선박검사원 응시 자격 부여

  ※ (예시) 전문고 졸업→해기사 면허 취득→근무 경력 → 선박검사원 응시자격 부여

3 환경미화원 채용·정년 운영의 합리성 제고

- 환경미화원 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 규정 삭제, 환경미화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

4 기대 효과

-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자 89,998명('20년 기준)에 대한 공직 임용시험 응시기회 안정적 부여

사례 30

공동주택 수도료 부과, 기준을 바로 세운다

■ 과 제 명_ 공동주택 수도요금 부과·운영 투명성 제고
■ 권고일자_ 2019. 4. 1.
■ 대상기관_ 17개 시도
■ 기관수용, 2019. 10. 31.(이행완료)

1 개 요

-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수도요금 부과방식이 수도사업소의 방식과 달라 실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징수하여 입주민의 민원 및 분쟁 야기

2 문제점

1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 미비

- 수도사업소의 공동주택 수도요금 산정 시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진 단가를 결정·부과하나, 관리주체 징수대행 시에는 기준이 없어 관례상 세대사용량에 따른 단가를 적용
  -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한 요금보다 더 많은 요금을 징수하여 잉여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원 및 분쟁 야기

2 공동주택 수도요금 잉여금 처리기준 미흡

-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세대의 수도요금 과납으로 발생한 잉여금에 대한 처리기준이 불명확해 임의로 사용
  - 세대수도료와 별개로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하는 '공동수도료'로 사용하거나 세대별 과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세대에 일정 비율로 반환
    ※ 요금을 과납한 세대는 공동수도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정상납부한 입주민이 추가 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관리비 고지 시 잉여금 발생 및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함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최종금액만 기재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

- 관리주체의 세대별 사용료 부담액 산정 시, 수도사업소에서 실제 부과하는 단가에 적용한 평균사용량 인정기준 마련

2 공동주택 수도요금 잉여금 처리기준 정비

- 관리주체는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잉여금 발생 시, 과납금을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세대 사용료에서 차감하도록 처리기준을 구체화
- 발생 잉여금 및 반환방법 등을 입주민이 알 수 있도록 관리비 등에 표기하여 고지하도록 규정

4 기대 효과

- 국민의 약 60%가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관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생활 질서 유지에 기여

사례 31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품목 확대한다

■ 과 제 명_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 권고일자_ 2019. 7. 15.
■ 대상기관_ 문화체육관광부 ■ 기관수용, 2019. 12. 31.(이행완료)

1 개 요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기프트카드임에도, 지역주관처와 가맹점을 통한 생필품 구매유도 등 부적정한 집행이 지속 발생

2 문제점

1 사용품목 제한기준의 불명확성 등으로 사용자 불만 발생

- 사용품목기준의 과다 제한, 불명확성 등으로 사용자 불만 및 의도하지 않은 위법행위 발생

  ※ (Ex) IPTV, 태권도 등 비허용, 축제장 외부반출 음식은 금지되나 영화관은 제한규정 없음 등

2 가맹점 운영 적정성에 대한 관리소홀

- 가맹점이 비허용품 판매 시 파악이 곤란하고, 탈퇴가맹점이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는 등 가맹점 운영 적정성에 대한 관리 소홀

3 복지시설의 단체사용 시 부담 발생

- 시설 대표자는 거주 장애인의 동의 후 단체구매 가능하나, 구비서류 불특정·표준양식 미비 및 대표자의 영수증 장기보관 등 부담 과도

4 위반유형 및 일괄결제 관리 소홀

- ‘부정사용 처리지침’상 위반유형에 사용되지 않는 과거 사업방식이 규정 및 동일장소·인접시간대 일괄결재 관련 규율 미흡 등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집행가능품목 개선

- 신규 문화체험 영역의 지속 발굴 및 집행가능품목의 점진적 확대
  ※ IPTV, 태권도, 지역축제행사 중 구매 음식물 반출 등 허용 전환

2 가맹점 관리감독 강화 및 현황 현행화

- 가맹점 운영 적정성에 대해 연1회 이상 확인·점검 실시
- 가맹점 탈퇴 등 변경사항 확인 시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

3 복지시설 단체 사용 시 서식 명확화·표준화 등 개선

- 복지시설 장애인 등 단체 사용 시 서류목록 명확화 및 표준양식 마련
- 영수증 등 서류의 5년 보관의무는 완화하여 관련지침에 반영

4 위반유형 현행화 및 일괄결제 관리 개선

- 부적정 집행유형 중 현재 미사용 위반내용 삭제 및 신규유형 정비
- 동일장소·인접시간대 일괄결재 등 위법집행 모니터링을 위해 정기점검 및 문체부·예술위 등 감독기관에 보고

4 기대 효과

- 저소득층의 문화누리카드 사용 편의 제고 및 투명한 사업집행 유도

사례 32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집행과정 공개하고 소비자 선택권 확대한다

■ 과 제 명_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투명성 제고 ■ 권고일자_ 2021. 2. 8.
■ 대상기관_ 환경부, 국토교통부 ■ 기관수용, 2021. 6. 30.(이행완료)

1 개 요

- 정부는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여 저공해·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유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조기폐차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 등

- 그러나, 공공기관이 아닌 임의설립단체가 신청자와 장치제작사 간 연계되어 수수료 수취·대납을 통한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 발생

  ※ 국민신문고 민원 : ('17.) 214건→('18.) 330건→('19.) 1,456건→('20.11월) 994건

2 문제점

1 차량 소유주를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안내기관의 불명확

- 법적근거 없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아닌 제3의 기관(부착지원센터㈜)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로 안내를 수행하고, 제작사로부터 수수료 수취

  ※ 센터로부터 안내를 받은 장치제작사는 건당 25~85만원의 수수료를 지불

2 유명무실한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제도

- 차주가 장치제작사와 계약체결 시 자기부담금(10%)을 납부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일부 제작사는 차주의 자기부담금 대납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20.8월), 제작사가 사업 시행초기부터 '20.7월까지 24만원에서 103만원에 이르는 차주의 자기부담금을 통상 대납

3 진행상황을 알 수 없고, 차주의 선택권이 제한된 부착과정

- 장치부착 시기 등 진행상황을 묻는 민원이 지속되고, 주된 운행지역에 지정공업사가 없는 경우, 장치부착을 위해 원거리로 이동하는 불편 발생

4 장치부착 후 관리 부실 등으로 국민불편 유발

- 이미 장치를 부착한 차주에게 장치부착 권유 안내문을 보내거나,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으로 민원발생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배출가스저감장치 안내기관 명확화

- 장치부착 지원사업이 '부착지원센터'와는 관련 없음을 명시하여, 차주의 혼란을 해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장치부착 건수에 따라 제작사로부터 받는 연동회비를 제한하여 불투명한 비용 수수 관행 근절

2 차량소유자 자기부담금 제도 실효성 강화

- 제작사별·연도별 장치 판매개수·매출이익 비교·검증하여 장치가격의 재검토
- 중고차 매매계약 전 차주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 체계를 강화하여 현재 차주의 피해 예방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진행과정 공개

- 차주의 장치제작사 및 공업사 선택권을 확대하여 국민불편 해소
- 장치부착 진행상황 상시 확인 체계 마련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관리 강화

- 장치부착 완료시점에 차주 유의사항 및 조치사항 안내

4 기대 효과

- 동일 보조금으로 보다 많은 차량에 장치부착 및 장치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도 경감
  ※ 매연저감장치 가격(최대 약 2백만원)의 64~78% 인하 예상('19년 단가 대비)
- 차주가 직접 매연저감장치 부착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개편하여 노후 차주의 불편 해소

사례 33

대입 전형료, 대폭 낮춘다

■ 과 제 명_ 대학입시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
■ 대상기관_ 교육부
■ 권고일자_ 2017. 7. 24.
■ 기관수용, 2018. 3. 31.(이행완료)

1 개 요

- 수능시험이 선택형으로 바뀌고 대학별 수시모집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대입 전형료'로 학부모 부담 가중
- 각 대학에서 대입 수시 · 정시 신입생 모집 시 전형료 책정기준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 발생

2 문제점

1 대입 전형료 산정기준 및 수입·지출 관리 미흡

- 명확한 산정근거 없이 책정된 전형료와 부대경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 가중
  - 서울소재 대학에 응시한 지방 수험생의 경우 전형료 외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으로 1인 평균 130만원 정도 지출

※ 전형료 72만원(수시 6회×100,000원=60만원, 정시 3회×40,000원=12만원),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을 포함하면 총 130만원 정도 지출(학부모 동행하면 2백만원 이상)

- 전형료 관련 수입·지출 정보공개가 미흡하고, 대입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내부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는 등 형식적 운영

2 대입 전형료 예산집행 부적정

- 「수입대체경비 세부집행지침」,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대학 입학전형료 집행 가이드라인」 등 전형료 예산집행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방만하게 운영
- 입시관리 수당 지급기준이 제각각으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등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식비 지급기준 및 예산집행도 불투명
  - 수도권 대학 전형료 대비 입시수당은 30~40%. 비수도권 지방대학 20~30% 수준, 시험관리 수당은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수도권 : 출제(P대 60~80만원,) 감독(H대 60만원,) 채점(J대 50~60만원), 면접(J대 70만원)
비수도권 : 출제(T대 6만원,) 감독(T대 5만원,) 채점(T대 5~10만원), 면접(P대 8만원)

3 권익위 제도개선 방안

1 전형료 책정 및 심의절차 투명성 제고

- 대입 전형료 세부 책정 가이드라인 마련(전형별 표준 원가계산 실시)
- 대입 전형료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서 공개
- 대입전형공정관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로 운영 내실화

2 전형료 예산과목별 집행기준 강화

- 인건비성 수당, 여비, 식비 지급 기준 명확화
- 대학 자체 시설관리 및 공공요금 지출범위 합리적 설정
- 홍보성 경비 용어 정의 및 지출범위 명확화
-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협) 중심의 대학입시 홍보 및 설명회 강화

4 기대 효과

- 대입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로 수험생 부담 완화 및 예산 낭비 방지
  → 합리적 전형료 산정으로 연간 60만명 이상의 수험생 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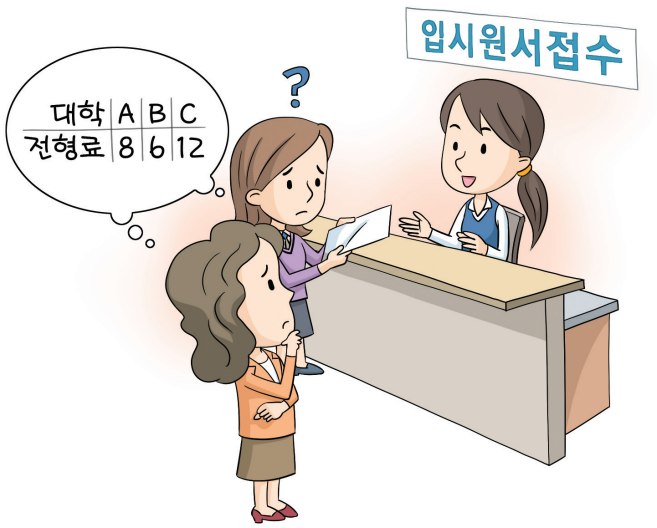

국민이 선정한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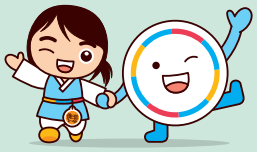

기타 사례
67선

사례 34 불볕 막아주는 고마운 그늘막, 시민 안전 해치지 않게!

■ 과 제 명_ 폭염 방지 그늘막 설치 · 관리 기준 마련 ■ 권고일자_ 2017. 9. 28.
■ 대상기관_ 243개 지방자치단체 ■ 기관수용, 2018. 3.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폭염방지 그늘막이 시민 호응으로 급증함에도, 제도적 근거 미비 등 체계적 관리 부족 및 잘못된 설치로 인해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부작용 빈발

2. 권익위 개선 방안

- 그늘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설치 · 관리 기준 마련
  - 그늘막의 형태 및 규격 명시(토지에 고정할 것, 안전성 고려 등)
  - 그늘막 운영 기간 및 장소 등 명시
  - 그늘막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 영조물 배상 보험에 관한 사항, 지자체 담당자 배정, 순찰에 관한 사항 등

3. 기대 효과

- 법령상 적합한 그늘막 설치 ·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늘막이 당초 설치 목적대로 뜨거운 여름철 시민들의 '안전한 쉼터' 역할을 수행

사례 35 유족 두 번 울리는 화장장려금 제한 개선한다

■ 과 제 명_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 권고일자_ 2021. 5. 12.
■ 대상기관_ 81개 지방자치단체 ■ 기관수용, 2021. 11. 30.(이행 중)

1. 문 제 점

- 지자체별 화장장려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지급이 제한되거나, 불명확한 절차로 유족에게 고충을 유발하는 등 사각지대 발생

2. 권익위 개선 방안

-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 외 '개장 화장', '영아·태아 등 화장'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유족의 주소지 제한을 폐지하는 등 불합리한 장려금 지급 제한규정을 개선
- 유족의 장려금 신청기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지자체의 지급기한을 명시하는 등 현행 불명확한 장려금 지급 절차 개선

3. 기대 효과

- 제도도입의 본래 취지에 맞는 화장장려금 지급 · 관리를 통해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이유로 소외되는 유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편·불만 해소

사례 36 일상 속 차별, 하나씩, 꼼꼼히 바꿔간다

■ 과 제 명_ 일상 속 불합리한 차별적 제도 · 관행 개선 ■ 권고일자_ 2021. 12. 22.
■ 대상기관_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방부 · 육군 · 해군 ■ 기관수용, 2022. 6. 30.(이행완료 예정)

1. 문제점

- 과태료 처분 받은 차량을 우선지원하는 불합리로 인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역차별 발생
- 국립공원 야영장 일부를 '예비영지' 명목으로 공단 직원들이 편법 유용
- 군무원 채용시험 시 '의사상자 가점' 부여를 국방부 및 군이 다르게 운영

2. 권익위 개선 방안

- 과태료 처분 받은 차량은 우선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단 직원의 예비영지 사용제한 및 전국 국립공원별 예비영지 운영현황 공개
- 기관별 군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적용 대상 범위를 동일하게 운영

3. 기대 효과

- 생활 속 불합리한 차별요인을 개선하여 공정한 혜택 부여 및 기회 형평 보장

사례 37 장애아동 위탁부모도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가능

■ 과 제 명_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 권고일자_ 2019. 9. 23.
■ 대상기관_ 보건복지부 ■ 기관수용, 2020. 3. 31.(이행 중)

1. 문제점

- 위탁부모는 장애아동의 실질적 보호자이나 자동차 주차표지를 발급받지 못해 아동의 병원진료 위한 이동 시 불편 발생 등 가정위탁제도*의 일부 미흡
  * 보호자의 부재, 학대 등이나 양육능력이 없는 경우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
- 종일반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입소 점수 부여 시 위탁아동이 위탁 부모의 '자녀'로서 지원·점수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

2. 권익위 개선 방안

- 장애인 자동차 표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장애아동의 위탁부모 포함
- 위탁아동에 대한 보육료 종일반 지원, 어린이집 입소 점수 부여 시 위탁부모 요건(자영업자, 맞벌이 등)을 적용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

3. 기대 효과

- 8,359세대('19년 기준) 위탁가정이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및 양육 편의 제고

사례 38 국·공립대학 비법정협의체 회비 예산사용 제한

■ 과 제 명_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관리 투명성 제고 ■ 권고일자_ 2021. 8. 9.
■ 대상기관_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기관수용, 2021. 1. 31.(이행 중)

1. 문 제 점

- 최근 대학에서 법률에 근거한 협의체* 외, 법적근거가 없는 임의협의체 설립 증가

  ※ 대학 간 법정협의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84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95년)

- 교비(학생 등록금)로 협의체 회비를 납부하고, 사적 용도로 집행하는 등 예산낭비 사례 발생

2. 권익위 개선 방안

- 법정협의체, 총장·처장협의체 외 비정상적 연회비 등 납부·적립 중단
- 임의협의체 임원 등은 겸직허가 대상으로 관리 강화 및 겸직 실태조사 실시
- 임의협의체 운영 지도·점검, 대교협 등 지원예산 집행실적 점검

3. 기대 효과

- 불필요한 임의협의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회비 임의 모집·불법 집행 관행을 개선하여 국·공립대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사례 39 소형건설기계 교육 이수증 허위 발급 방지

■ 과 제 명_ 소형건설기계 면허 발급과정의 공정성 제고방안 ■ 권고일자_ 2020. 12. 7.
■ 대상기관_ 국토교통부 ■ 기관수용, 2021. 12. 31.(이행 중)

1. 문 제 점

-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착기 등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만으로 기술자격 취득 가능
- 일부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증 허위 발급 문제 등 지속 발생

2. 권익위 개선 방안

- 허위 교육이수증 발급 방지를 위한 광역지자체 장의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 마련
- 교육기관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및 교육기관 시설 기준 명확화 등

3. 기대 효과

- 소형기계 교육이수증 허위 발급을 방지하고 면허 발급과정의 공정성 제고

사례 40 노후 연금 수급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 과 제 명_ 노후 대비 연금수급권 보호 강화
■ 권고일자_ 2017. 10. 16.
■ 대상기관_ 금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기관수용, 2018. 12. 31.(이행 중)

1. 문 제 점

- 농지연금, 주택담보 노후연금은 근거법령에서 수급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추심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압류되는 사례 빈발
- 노후생활자금의 안정적인 지급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압류에 취약한 구조로 운영되어 최저생계비 실효적 보호가 미흡

2. 권익위 개선 방안

- 노년층 연금 수급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법적 근거 마련
- 시중은행과 협약하여 압류방지 전용 통장제도 도입·시행

3. 기대 효과

- 노후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연금 수급권의 실질적 보호 및 안정적 지급

사례 41 공항 귀빈실, 특혜·불공정 사용 차단

■ 과 제 명_ 공항 귀빈실 사용의 특혜 방지 방안
■ 권고일자_ 2018. 12. 3.
■ 대상기관_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기관수용, 2019. 6. 30.(이행완료)

1. 문 제 점

- 무분별한 귀빈실 사용대상자 선정·임의확대 등 공항공사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해 특혜제공 시비 야기
- 귀빈실 사용기록 미작성 및 사용통계 미공개 등으로 인해 외부 감시·확인이 사실상 불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저해

2. 권익위 개선 방안

- 공항공사 사규로 포괄적·불명확하게 설정된 사용대상자를 삭제 하는 등 공항 귀빈실 사용대상자의 합리적 조정
- 귀빈실 사용 현황에 대한 기록 작성·관리를 의무화하고, 귀빈실 사용통계를 공사홈페이지 등에 주기적 공개

3. 기대 효과

- 공항 귀빈실 사용대상자의 구체적 지정 등을 통해 공무 외 사적사용의 차단 등 부조리한 특혜제공 관행 개선

사례 4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한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 과 제 명_ 하수도 사용료 부과 · 징수체계 개선방안 ■ 권고일자_ 2019. 4. 29.
■ 대상기관_ 지방자치단체 ■ 기관수용, 2020. 12. 31.(이행 중)

1. 문 제 점

-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닌 정화조 등 개별정화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에게도 하수배출구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일괄 부과
- 과오납된 사용료에 대한 환급 기준 및 사용료 미납 시 연체금의 부과·징수 기준이 미비하고,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

2. 권익위 개선 방안

-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자에 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 과오납 사용료, 연체금에 대한 환급·절차·방법 및 사용료 부과·환급에 대한 소멸시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

3. 기대 효과

- 하수도 요금관련 민원·분쟁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요금 부과·징수에 대한 신뢰 향상

사례 43 건설공사감리 하도급을 제한·금지 하도록 관련법률 정비

■ 과 제 명_ 건설사업관리(감리) 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선 ■ 권고일자_ 2021. 12. 20.
■ 대상기관_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 기관수용, 2022. 6. 30.(이행완료 예정)

1. 문 제 점

- 건설엔지니어링은 일반 건설사업과 달리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에 개입하는 등 부패발생요인 내재
- 감리비 산정 시 복수예비가격을 기초금액의 97±3% 범위 내에서만 책정하고 있어 저가 감리계약 폐해 발생
- 건설기술인에게 불합리한 '결격사유' 적용 및 제도 운영

2. 권익위 개선 방안

-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제한·금지 하도록 관련법률 정비
-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복수예비가격 산정(97±3%) 기준 삭제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감리업무 수행 등의 결격사유로 정비

3. 기대 효과

- 건설기술인에게 불편·부담을 전가해온 그 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적정하게 처우를 개선하여 책임성 강화 및 안전 확보

사례 44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물주차장 출입구 안전시설 규정 개선

■ 과 제 명_ 건물주차장 출입구 시각장애인 안전시설 보완
■ 대상기관_ 국토교통부
■ 권고일자_ 2017. 7. 25.
■ 기관수용, 2018. 12. 31.(이행 중)

1. 문 제 점

- 건물주차장 출입구 부근의 보행자 안전시설(점자블록) 설치규정이 없어 차량 진출입 시 시각장애인이 사고위험에 노출

※ 관련규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별표1은 차량 진출입부 보도의 높이, 턱 낮추기, 색상·질감만을 규정

2. 권익위 개선 방안

- 보도를 횡단하는 진입로에 점자블록 설치규정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확보

3. 기대 효과

- 건물주차장 출입구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 보행안전 확보에 기여

사례 45 대학회계 내부신고 보호시스템 구축

■ 과 제 명_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
■ 대상기관_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 권고일자_ 2019. 1. 21.
■ 기관수용, 2019. 12.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대학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감사시스템 미비·신고자 신분유출·주요정보 미공개 등 자율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교비횡령이나 채용·학사비리 등 부패행위 빈발

※ 재정지원 규모는 '16년 기준 약 6조(인건비 등 간접지원 포함시 약 13조)

2. 권익위 개선 방안

- 대학의 자율적 내부감사시스템 및 내부신고자 보호시스템 구축
-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한 대학평가기준 구체화, 내부감사체계 평가 개선
- 의무적 외부회계감사 항목 확대 등 외부감사의 실효성 강화
- 유형별 징계처분기준 확립 및 부패행위 고발기준 마련
- 대학정보공시센터를 통한 정보공개 확대 및 이해충돌방지 장치 보완 등

3. 기대 효과

- 417개 대학의 회계처리 부적정,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채용비리 등 연간 약 2,800여건(위반예상액 약 3조 5천억원)의 법령 위반 사례 감소 추정

※ 3조 5천억원 = 132억원(1년 7월간 1대학 위반액) × 417개 대학 × 12개월/19개월
※ '17. ~ '18. 7월간 교육부의 30개 대학 감사결과 총 350건 위반액 3,967억원 적발

사례 46 법무사, 변리사 등 자격증 대여·알선하면 처벌받는다

■ 과 제 명_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 권고일자_ 2018.12. 17.
■ 대상기관_ 법무부, 교육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 ■ 기관수용, 2019. 12. 31.(이행 중)

1. 문 제 점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국가전문자격증 : 의사, 양사, 변호사, 법무사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정부부처가 운영
-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규정한 개별 법률의 제재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불법행위 방지의 실효성·형평성 저해

2. 권익위 개선 방안

-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형사처벌 규정 마련
- 대여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3. 기대 효과

-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소지자의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 예방으로 청렴문화 조성에 기여

사례 47 공공기관 인터넷 유통사업자 선정 시 공개경쟁 강화

■ 과 제 명_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인터넷 유통사업 투명성 제고 ■ 권고일자_ 2017. 10. 16.
■ 대상기관_ 국방부, 공무원연금공단 등 10개 기관 ■ 기관수용, 2018. 5. 30.(이행완료)

1. 문 제 점

- 인터넷 유통사업 참여업체 선정과정 불투명
  ※ 일부 공기업 인터넷쇼핑의 경우 80여개 업체 중 5개 업체만 공개경쟁으로 선정
- 메인화면 상품 배치와 게시 시간대 등의 결정기준이 불투명
- 상품 검사·물품 배송 및 고객관리 등 사후관리 미흡

2. 권익위 개선 방안

- 참가 준비기간을 1개월 이상 부여하고, 계약자 선정·재계약 등 심의 의무화
-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 메인화면 개편
- 민원 처리결과 공개 및 외부 검사기관과 합동 품질 검사, 점검자 실명제 도입 등 제재조치 및 품질관리 강화방안 마련

3. 기대 효과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 인터넷 유통 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례 48 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음주운전 수사사실 소속기관에 통보

■ 과 제 명_ 공공부문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 ■ 권고일자_ 2021. 7. 7.
■ 대상기관_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 기관수용, 2022. 7. 31.(이행완료 예정)

1. 문 제 점

- 공공부문 종사자는 공적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나, 일부 제도의 미흡으로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엄정한 처리 불가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 통보 의무 존재

2. 권익위 개선 방안

-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사통보 대상 범위에 성범죄, 음주운전 사건 포함
  ※「공공기관운영법」(기재부),「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행안부) 개정
-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등 수사사실 통보 의무가 규정된 법률을 수사기관 내부지침의 수사사실 통보 규정에 포함
  ※「검찰사건사무규칙」(법무부),「범죄수사규칙」(경찰청) 개정

3. 기대 효과

- 공공기관(342개), 지방공사·공단(152개), 지방출자출연기관(458개) 종사자의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실효성 제고로 공공부문 신뢰성 회복에 기여

사례 49 공공조달 뇌물 제공업체 제재 감경 배제

■ 과 제 명_ 공공조달 과정의 뇌물 제공업체 제재 실효성 제고 ■ 권고일자_ 2018. 2. 5.
■ 대상기관_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7개 중앙행정기관 ■ 기관수용, 2019. 2. 28.(이행완료)

1. 문 제 점

- 부정당업자 대상 자의적 감경이 빈번하여 제재의 실효성·공정성 저하
- 뇌물 제공업체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 및 제재 누락

2. 권익위 개선 방안

- 조달계약 법령 개정을 통해 뇌물제공 부정당업자 제재 감경 배제
- 법령과 시스템을 보완하여 제재 사각지대 해소

3. 기대 효과

- 건전한 조달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공익침해의 최소화 및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

사례 50 근로자 연말정산 시 실부양 계부·계모도 인적공제에 포함

■ 과 제 명_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방안
■ 대상기관_ 기획재정부, 국세청
■ 권고일자_ 2019. 10. 7.
■ 기관수용, 2020. 4. 30.(이행완료)

1. 문 제 점

- 위탁아동 등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 인정기준 불합리
- 폐업·부도 회사 등 근로자의 환급세액 수령방안 부재
- 주택마련자금 소득공제 관련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사각지대 존재

2. 권익위 개선 방안

- 기본공제 인정대상에 보호기간 연장 아동·실부양 계부·계모 포함
-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부도 등의 경우 근로자 환급신청 근거 마련
-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소득자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인정

3. 기대 효과

- 근로자 연말정산 공제제도 개선을 통한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권익 증진

사례 51 신고포상금제 내부직원에게 지급 제한한다

■ 과 제 명_ 신고포상금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
■ 대상기관_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33개 부처
■ 권고일자_ 2019. 12. 23.
■ 기관수용, 2020. 6. 30.(이행완료)

1. 문 제 점

- 신고포상금제도는 1951년 국세청 탈세제보신고포상금 시행 이후 매년 확대되었으나, 제도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 발생

  * 일부 포상금의 법적 근거 미흡, 업무처리 공직자 등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전문신고자에 의한 부작용 등

2. 권익위 개선 방안

- 고시·훈령 등에 따라 운영 중인 경우 상위법령에 근거 마련
-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직무관련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이를 심사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등 구성·운영
- 일정기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운영방식 개선을 검토하는 절차 마련
- 기초질서 위반 분야의 반복적이고 경미한 신고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지급한도액·건수 설정 등 지급기준 개선

3. 기대 효과

- 52개 규정을 정비하여 연간 약 10억원*의 부당 집행액을 절감 추정

  ※ 관세청 약 6억 8천만원 + 산림청 약 1억 3천만원 + 문화재청 약 1천만원 + 법무부 등 약 1억 3천만원 등

사례 52 매입 임대주택, 표준관리방안 마련한다

■ 과 제 명_ 매입 임대주택 체계적 관리방안
■ 대상기관_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개발공사
■ 권고일자_ 2020. 8. 3.
■ 기관수용, 2021. 2. 28.(이행 중)

1. 문 제 점

- 지자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적용하는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세부 관리기준이 없어 입주민 불편 발생, 안전사고에 취약한 실정

2. 권익위 개선 방안

- 운영기관별 세부기준을 마련토록 의무화하고, 표준관리방안 마련·배포
- 주민 자율관리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리비 부과·집행내역 점검·공개
- 민원유형별 처리기간 규정, 휴일·야간 비상연락망 제작·배포 등 주민 불편사항 신고·처리 체계 마련 및 시설 점검·보수 강화
- 운영기관 및 위탁기관의 운영실적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 근거 마련

3. 기대 효과

- 약 14만호의 매입 임대주택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사례 53 공공부문 정책연구용역 이해충돌방지 기준 도입

■ 과 제 명_ 공공부문 정책연구 투명성 제고방안
■ 대상기관_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 권고일자_ 2018. 10. 8.
■ 기관수용, 2019. 10.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중앙행정기관 등이 정책결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연구용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연구수행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부족

※ 최근 5년 정책연구용역 투입 예산 규모 : 33,985건, 2조 3,631억원

2. 권익위 개선 방안

- 연구자선정·결과평가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영평가위원의 용역수주에 대한 이해충돌방지기준 마련 등 연구용역 관리규정 정비
- 연구목록과 내용공개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충실한 공개를 위한 연구용역 공개포털* 구축·개편

* 프리즘(중앙·지자체·교육청), 알리오(공공기관), 클린아이(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 과제검수단계에서의 중복·유사성 검증 제도화, 검증결과와 제재조치 연계 및 유사성통합검증시스템 구축 검토

3. 기대 효과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1,200여개 기관의 정책연구 과정에서 부당 수의계약 방지 기대(5년간 수의계약 9,793개 약 5,130억원 규모)

사례 54 신규 계좌 개설 시, 증빙서류 대폭 간소화

■ 과 제 명_ 은행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제도 개선
■ 대상기관_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권고일자_ 2020. 5. 11.
■ 기관수용, 2021. 4. 30.(이행 중)

1. 문 제 점

-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신규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 은행별 증빙서류가 제각각이고 법률·은행약관에 근거가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민원이 은행창구 현장에서 지속 발생

2. 권익위 개선 방안

- 법령 또는 금융회사 약관에 금융거래목적확인 제도 근거 마련
- 금융거래 목적 확인 증빙서류 간소화 및 인터넷 전문은행 등의 한도계좌 해제 시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 금융회사 창구나 홈페이지 활용, 관련제도와 증빙서류 안내 강화

3. 기대 효과

-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로 인한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연간 약 1,200여건의 민원 감소 전망

사례 55 지방의회예산, 편법·사적 사용 제한

■ 과 제 명_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 대상기관_ 지자체
■ 권고일자_ 2018. 3. 26.
■ 기관수용, 2019. 2. 28.(이행 중)

1. 문 제 점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법령, 행동강령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예산을 편법·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한 집행 행태 지속
  ※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이 제한된 주점·공휴일·심야시간대 사용
- 자체감사 시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는 매우 미흡한 실정

2. 권익위 개선 방안

-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개정
-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계획에 의회사무기구(처·국·과)를 포함하고, 감사주기에 따라 재무감사 등 실시 의무화

3. 기대 효과

-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한 예산집행으로 투명성 제고 기대

사례 56 일자리 관련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응시기회 확대

■ 과 제 명_ 일자리 관련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합리성 제고 ■ 권고일자_ 2017. 12. 12.
■ 대상기관_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관수용, 2018. 12.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직업훈련 수요, 자격증 취득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기시험 횟수 및 장소 부족으로 다수 민원 발생
- 실기시험 채점기준 비공개 및 채점결과를 총점만 공개하여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 민원 창구를 비공개로 운영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시험운영 부실

2. 권익위 개선 방안

- 실기시험장 추가 확보 및 실기시험 횟수 추가로 실기시험 응시기회 확대
- 종목별 채점·감점 기준 및 실기시험 결과 항목별 공개
- 자격검정시험 접수시스템 민원창구(티큐넷) 공개 등 시험 운영 관리 내실화

3. 기대 효과

- 국가기술자격시험과 일자리 연계 강화로 인력수요 규모 확대
- 산업인력 수요와 직업훈련 수요 간 불일치 해소로 일자리 창출 증대

사례 57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 편법 사용 금지

■ 과 제 명_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방안 ■ 권고일자_ 2019. 12. 9.
■ 대상기관_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 ■ 기관수용, 2020. 6. 30.(이행 중)

1. 문 제 점

-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휴직을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나 제재 규정 미비로 조치가 어려운 실정
- 대다수 공직유관단체가 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내부 점검규정 미제정
-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복무점검 미실시

2. 권익위 개선 방안

- 휴직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
- 휴직제 운영에 대한 기관 자체여건을 고려하여 휴직자 복무관리 세부기준 마련

※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개념 명시, 휴직실태 정기 점검, 복무상황 정기 보고 등

3. 기대 효과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규정을 마련하여 부적정한 휴직 사용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사례 58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알 권리, 권익보호 강화한다

■ 과 제 명_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강화 ■ 권고일자_ 2021. 6. 21.
■ 대상기관_ 교육부, 고용노동부 ■ 기관수용, 2022. 6. 30.(이행완료 예정)

1. 문 제 점

- 매년 2~3만여 명의 직업계고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
  ※ '19년,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87,471명 중 26,124명(약 30%) 참여
-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괴롭힘, 성 비위 등 지속 발생으로,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17년 제주 생수공장 사망사고, '17년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 '20년 대전 실습생 성추행·폭행, '21년 여수 잠수사망 등

2. 권익위 개선 방안

- 학교 현장실습위원회에 학생 참여 보장 및 세부지침 규정 등 운영 내실화(교육부)
- 현장실습 관련 권익구제 절차 사전안내 · 정보제공 확대 등(교육부)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및 현장지도·점검사항 추가 등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고용노동부)
- 현장실습 기업의 인식 개선 및 책임성 강화 교육·노무컨설팅(교육부, 고용노동부)

3. 기대 효과

- 학교 외 실습으로 보호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안전 보호 강화

사례 59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자!

■ 과 제 명_ 민원24를 통한 영문 장애인증명서 발급 개선 ■ 권고일자_ 2017. 9. 25.
■ 대상기관_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기관수용, 2018. 3.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정부의 전자민원 서비스가 확대되고 국제화 시대에 영문증명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불가
  – 장애인은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해외 체류 중 증명서를 분실·훼손할 경우 장애 증명이 어려움

2. 권익위 개선 방안

- 영문 표기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위한 법정 서식 규정 마련
- 민원24 시스템을 통한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

3. 기대 효과

- 장애인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로 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확산에 기여

사례 60 범죄신고자도 보호 내용 사전에 고지 받는다

■ 과 제 명_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 대상기관_ 경찰청
■ 권고일자_ 2020. 8. 24.
■ 기관수용, 2021. 2. 28.(이행 중)

1. 문 제 점

- 범죄신고자에게 여러 보호제도를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흡하여 신고자 및 참고인 보호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우려
  ※ '14년 이후 보복범죄 우려로 신변보호조치 신청 사례는 11,600여건('19.10월 기준)
- 신고자에게 제공하는 '참고인 권리안내서'는 보복우려 시 신변안전조치만 포함

2. 권익위 개선 방안

- 범죄신고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호제도를 안내하도록 「범죄수사규칙」 개정
- '참고인 권리안내서'에도 보복우려 신변안전 조치 외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보좌인 지정 등 보호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

3. 기대 효과

- 범죄자의 협박 또는 신체적 위해로부터 범죄신고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누락 방지를 통해 범죄신고자 보호제도 실효성 확대

사례 61 공연예술 공모·지원 사업, 중복지원 차단

■ 과 제 명_ 공연예술분야 공모·지원사업 공정성 제고
■ 대상기관_ 문화체육관광부
■ 권고일자_ 2021. 7. 5.
■ 기관수용, 2022. 1. 31.(이행 중)

1. 문 제 점

- 심사위원 선정기준 미비 등 공모·지원사업 심의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만연
- 심사위원의 직접 사업 참여 등 이해충돌상황 발생
- 자택심사 관행화·보안장치 미비 등 비정상적 사업자 선정방식 운영
- 사실상 동일단체·동일사업에 대한 예산의 중복지원 심화

2. 권익위 개선 방안

- 선정기준 개선·공개 등 지원사업 심의·평가기구 공정성 담보장치 강구
- 심사위원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이해충돌방지 강화
- 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집합심의 및 보안 강화 등 심의방식 개선
- 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의 중복지원 제한 등

3. 기대 효과

- 공연예술분야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체계가 확립

사례 62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개입찰 제도 도입

■ 과 제 명_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 권고일자_ 2017. 10. 16.
■ 대상기관_ 광역자치단체 ■ 기관수용, 2018. 12.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 시공업체와 관리주체간 유착 개연성, 도로 노후시설 교체 등 긴급하지 않은 사업에 지원 사례 빈발
- 공동주택 단지별 자체 공사발주, 시설공사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준공검사를 자체 준공검사서로 대체, 지원사업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미흡 등으로 불법행위 발생

2. 권익위 개선 방안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1개월 전 공고 의무화, 심사위원 기피·회피제, 시설개선사업 우선순위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 제고
-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의 공개입찰제도 도입, 일정금액 이상 보조금 지원 공사의 정기점검 의무화, 정산 및 결과 정보공개 의무화 등 보조금 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강화

3. 기대 효과

- 공동주택 단지 지원대상 사업 선정, 집행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로 예산낭비 방지

사례 63 공무직 등 채용공고 없는 깜깜이 채용, 이제는 근절

■ 과 제 명_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절차의 공정성 강화 ■ 권고일자_ 2019. 12. 2.
■ 대상기관_ 고용노동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 기관수용, 2020. 6. 30.(이행완료)

1. 문 제 점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시, 최소 채용공고 기간규정 부재 및 채용공고 생략 등 공고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저하로 채용비리 문제 발생

2. 권익위 개선 방안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시 최소 공고기간 설정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공고 생략규정 정비(삭제 또는 구체적 단서 마련)

3. 기대 효과

- 공무직 등 근로자 채용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고히 하여 채용기회의 균등 실현

사례 64 장기 미보유(멸실인정)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 과 제 명_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
■ 대상기관_ 국토교통부
■ 권고일자_ 2020. 6. 22.
■ 기관수용, 2021. 6. 30.(이행 중)

1. 문 제 점

- 시도지사가 멸실인정 한 차량도 압류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없으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차량 방치 등에 따른 국민 불편 발생
  ※ '15년 제도 시행 후 멸실인정 후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차량 약 11.5만대('20.3월 기준)
- 사실상 미소유(멸실) 상태이며 재산가치가 없는 멸실인정 차량을 말소등록하기 위해 압류 문제 등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에 해당

2. 권익위 개선 방안

-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 시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 등 절차를 생략하도록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9항 개정
- 이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도 신설

3. 기대 효과

- 11.5만대 차량에 불필요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되는 문제 해소 등 '자동차 멸실인정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간 마련

사례 65 자동차 이용 범죄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못해

■ 과 제 명_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 대상기관_ 경찰청
■ 권고일자_ 2019. 11. 18.
■ 기관수용, 2019. 11. 30.(이행완료)

1. 문 제 점

- 차량을 이용한 강력 성범죄 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제재처분을 면제받는 사례 발생
-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절차가 마련되지 않고, 안내도 미흡하여 마일리지 미사용으로 인한 사례 빈발 등 운영상 문제 야기

2. 권익위 개선 방안

-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불가
-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절차 마련 및 사용방법 사전 안내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중단될 수 있음을 고지

3. 기대 효과

- 비난 가능성이 높은 차량 이용 성범죄 시 마일리지 사용을 금지하고,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여 국민안전과 편의 향상

사례 66 장애인의 자동차검사 예약 시 수수료 즉시 감면된다

■ 과 제 명_ 장애인 등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방식 개선 ■ 권고일자_ 2017. 9. 25.
■ 대상기관_ 교통안전공단 ■ 기관수용, 2018. 12.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동차 검사비 감면은 검사비 총액을 결제하여 예약·검사 후 감면액을 환불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불편 및 행정 비효율 초래

  ※ 코레일 등 여러 기관이 요금 감면제도 운영 시 예약 단계에서 감액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가는 추세

2. 권익위 개선 방안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대상자는 예약 시 감면액을 공제한 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3. 기대 효과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시 수수료 감면제도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불편 해소

사례 67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해진다

■ 과 제 명_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방안 ■ 권고일자_ 2017. 9. 25.
■ 대상기관_ 행정안전부 ■ 기관수용, 2018. 8.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불법 현수막 제거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일선 현장에서 법 적용상 혼란 발생
- 불법 현수막 과태료 산정 시, 부과 단위 부재 및 중복 위반 시 가산금 부과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자체 대부분이 가산금을 미부과

2. 권익위 개선 방안

- 불법 현수막 제거명령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동일하게 규정
- 불법 현수막 '1장 당'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단위 명시
- 중복 위반 시 위반횟수별로 가산금 부과금액 범위를 정하여 시 · 군 · 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3. 기대 효과

-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절차 등 불명확한 제도를 정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집행과 이를 통한 불법 현수막 근절 유도

사례 68 공공기관 퇴직자단체 등 위법·부당한 예산지원 금지

■ 과 제 명_ 공공기관의 퇴직자단체 등과 특혜성 계약관행 개선방안 ■ 권고일자_ 2017. 12. 26.
■ 대상기관_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기관수용, 2018. 12.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퇴직자단체와 특혜성 계약 체결, 불법적인 예산지원 지속 발생
- 퇴직자단체에 사무실 무상임대, 행사비 지원 등 불법적인 예산지원 사례 발생
- 일부 공공기관은 기관 내부규정 등을 근거로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

2. 권익위 개선 방안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간 수의계약 금지 근거 규정 마련
- 퇴직자, 퇴직자단체 등에 위법·부당한 예산지원 금지

3. 기대 효과

-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수의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간 남아있던 관리 사각지대까지 확대 적용하여 특혜성 계약 관행 근절 유도

사례 69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표절·도용 검증절차 마련

■ 과 제 명_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공정성·신뢰성 제고 ■ 권고일자_ 2021. 6. 21.
■ 대상기관_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 기관수용, 2022. 12. 31.(이행완료 예정)

1. 문 제 점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기존 수상작 등을 표절·도용하여 수상한 사례 다수 발생

2. 권익위 개선 방안

- 심사위원회 운영 및 응모작 심사과정에 국민참여 확대, 공개검증 강화 등 행정기관 공모전 통합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행안부)
- 정보 등록·관리, 공개심사·검증 등 공모전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행안부)
- 참여자 윤리의식 개선방안 마련 및 타인 창작물 존중 등 인식 및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추진(행안부, 문체부 등)

3. 기대 효과

-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심사·검증 절차 마련 및 공모전 공고부터 공개심사·검증, 수상작 공개까지 통합관리 플랫폼 마련
-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기관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사례 70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해진다

■ 과 제 명_ 성범죄경력조회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 권고일자_ 2018. 10. 22.
■ 대상기관_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 기관수용, 2019. 12. 31.(이행 중)

1. 문 제 점

-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가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인·허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성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 반복
- 성범죄 등 조회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관계기관 노력 부족

2. 권익위 개선 방안

- 아동·청소년시설 운영자·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사무 처리 시 구비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 명문화
-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무기관은 아동·청소년 시설 인·허가 관할기관 및 성범죄경력조회 민원사무기관 등과 협의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기반 마련

3. 기대 효과

- 전자정부 구현 취지에 맞게 성범죄 등 경력조회시 민원 서류제출 부담 감소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

사례 71 코로나로 학사일정 변동시 실제 개강일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

■ 과 제 명_ 대학운영 학생참여 보장 및 등록금사용 투명성 강화 ■ 권고일자_ 2020. 12. 7.
■ 대상기관_ 교육부 ■ 기관수용, 2021. 5. 31.(이행 중)

1. 문 제 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진행으로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요구 빈발
  ※ 대학생(42개 대학) 3,500명이 대학 및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 제기('20.7.1.)
- 등록금 사용 상세내역 미공개로 학생들의 불신 증폭

2. 권익위 개선 방안

- 대학등록금 세부산출기준 공개
- 재난 발생으로 학사일정이 변동되는 경우 실제 개강일자를 기준으로 등록금 환불

3. 기대 효과

- 대학등록금 산출기준 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 정보 미공개로 인한 소송 등 방지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 지출 감소
- 연간 약 85만명의 휴학생에게 7,000억원의 등록금 추가 반환으로 재난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적 토대 구축

사례 72 색약자도 육군·공군 조리병으로 복무 가능 등

■ 과 제 명_ 청년체감 공정과제(1) – 병역처분 통지 편의성 제고 등 –
■ 대상기관_ 국방부, 병무청
■ 권고일자_ 2020. 6. 8.
■ 기관수용, 2020. 6. 30.(이행완료)

1. 문 제 점

- 병역처분 통지절차 미비 및 병력처분 불복에 대한 이의신청 오고지
  ※ 병역처분에 불복 시, 신체검사등급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잘못 안내
- 신체검사등급판정에 불복 시, 신체검사를 한 병무관청에만 이의신청서 접수
- 해군·해병과 달리, 육·공군은 색각 이상자를 조리병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권익위 개선 방안

- 병역처분 통지절차 마련 및 오고지 내용 즉시 시정
- 모든 병무관청에서 신체검사 이의신청 접수 및 색약자도 조리병 지원 적격 인정

3. 기대 효과

- 병역의무 지원과정에서의 불편·불공정을 해소하여 군 입대를 앞둔 예비 장병과 부모의 불안감 해소 및 군 신뢰 회복

사례 73 복잡·난해한 행정제재 가중규정 명확해진다

■ 과 제 명_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 대상기관_ 기획재정부 등 39개 중앙행정기관
■ 권고일자_ 2021. 2. 22.
■ 기관수용, 2022. 12. 31.(이행완료 예정)

1. 문 제 점

- 일정기간 내 같은 위반행위 반복 시 가중처분 적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복잡하여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부패 발생 및 국민권익 침해 우려
- 특히 가중처분 적용시점, 가중기간 기산, 위반차수 적용 등을 불확정 시점으로 규율하여 법 적용·준수에 혼란 야기

2. 권익위 개선 방안

- 자의적 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적용요건 마련 및 일정기간의 기산점 명확화
- 가중처분 적용시점 명확화 및 위반차수 적용규정 마련
- 과태료 등이 체납된 위반자의 부당한 감경 방지 등

3. 기대 효과

- 가중처분에 관한 근거규정의 명확화로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행정처분의 적용상 혼란 방지

사례 74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금지 등 부동산 투기 차단

■ 과 제 명_ 개발공기업 임직원의 정보이용 투기행위 방지 방안 ■ 권고일자_ 2021. 7. 5.
■ 대상기관_ 99개 부동산 개발 공직유관단체 ■ 기관수용, 2021. 10. 30.(이행 중)

1. 문 제 점

- 일부 공기업 직원의 기관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추구 불공정 의혹이 사회 전반의 공분을 사면서 국민은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

※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부정취득 제한이나, 등록·신고의무를 규정한 기관은 전무한 실정 등

2. 권익위 개선 방안

- 기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 제한 내부규정 마련 및 징계현황 공표 규정 보완
- 부동산 개발정보의 대외비 관리 비밀준수 의무 명확화
- 사적이해관계자 제척·기피·회피 관련 통합규정 운영
- 퇴직자의 불공정행위 방지 강화 및 이해충돌방지 위한 종합적 징계기준 마련

3. 기대 효과

- 공공성이 큰 토지나 주택의 개발·공급 관련기관의 정보유용을 방지하고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강화하여 공급 투명성 확보 및 대국민 신뢰성 제고

사례 75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산정 시 군복무 기간도 포함

■ 과 제 명_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 권고일자_ 2020. 5. 11.
■ 대상기관_ 법무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기관수용, 2021. 12. 31.(이행 중)

1. 문 제 점

-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 산정 시 취업가능기간은 만 19세~65세까지이나, 미성년자 등 향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남성은 군복무기간을 제외
  - 동일 조건 시 여성 등 대비 2,800만 원 감소하는 등 차별 발생 소지
- 현가 환산 시 중간이자는 법정이율(5%)을 동일하게 적용하나 단리로 계산하는 법원과 달리 보험은 복리로 계산해 배상액을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

2. 권익위 개선 방안

- 미성년 등 군복무예정인 남성에 대해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
- 자동차보험 손해배상 시 금리 상황과 법원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단리 방식으로 개선

3. 기대 효과

- 손해배상제도의 불공정한 부분을 개선하고 소모적인 분쟁 감소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국민 편의 제고

사례 76 대학 공개강좌 개설 운영의 법적 근거·기준 마련

■ 과 제 명_ 대학 공개강좌 운영의 특혜소지 차단방안 ■ 권고일자_ 2019. 2. 18.
■ 대상기관_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공립 대학 ■ 기관수용, 2019. 8.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재계 임원, 일반인보다는 상대적으로 고위공직자에게 장학금, 수강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 □□대 ○○리더과정(2,100만원), △△대 최고○○과정(1,500만원)
- 강좌개설과 수강생 모집이 개설기관장(주임교수 등) 역할에 의존하여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곤란

2. 권익위 개선 방안

- 공개강좌 개설·운영의 법적근거·기준 마련
- 공직자 대상 특혜성 장학금 지급 금지
- 공개강좌 예산을 대학회계에 통합·운영
- 공개강좌 운영내용 공개 의무화

3. 기대 효과

- 대학 공개강좌 운영과정에서 공직자 특혜소지 방지 및 회계 투명성 확보

사례 77 신입생 허위등록 방지 위한 검증·제재 강화

■ 과 제 명_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 권고일자_ 2020. 11. 23.
■ 대상기관_ 교육부 ■ 기관수용, 2021. 12. 31.(이행 중)

1. 문 제 점

-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해 정원감축 유도 등 자율적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에서 진단 통과를 위해 충원율을 높여 신입생 허위 입학처리 등 입시비리 지속 발생 및 평가·검증 부실

2. 권익위 개선 방안

- 신입생 충원율 진단 시 중도탈락률 등 감점 지표 도입해 학생 충원율 검증하고, 신입생 중도탈락률 등을 구분 공시하여 정보제공 강화
- 진단과정에서 발견된 중대 부정·비리 사안은 감사 실시 또는 고발 조치
- 진단 등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3. 기대 효과

-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대한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허위·조작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차단하여 재정누수 방지 및 대학역량 강화

사례 78 학업중단학생도 인터넷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받으세요!

■ 과 제 명_ 국민편의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 ■ 권고일자_ 2020. 11. 23.
■ 대상기관_ 교육부 ■ 기관수용, 2023. 12. 31.(이행완료 예정)

1. 문 제 점

- 학업 중단 학생은 학업 중단 이전의 성적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를 발급받기 위해 직접 학교에 방문해 신청·발급받아야 하는 불편 발생
  ※ 졸업생과 재학생만 성적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인터넷 신청 가능

2. 권익위 개선 방안

- 나이스(NEIS) 홈에듀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학교생활기록부 및 성적증명서 발급 범위를 학업 중단 학생까지 확대

3. 기대 효과

- 학업 중단 학생도 졸업생·재학생처럼 인터넷을 통해 교육 증명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불편 개선

사례 79 고속도로 통행료 꼼수 면제차량 막는다

■ 과 제 명_ 긴급차량 통행료 면제 등 하이패스 운영 투명성 제고 ■ 권고일자_ 2017. 12. 26.
■ 대상기관_ 한국도로공사 ■ 기관수용, 2018. 12.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軍작전, 구급, 교통단속 등 특정차량에는 하이패스카드를 장착하여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이를 미등록 차량에 장착·사용하는 부정행위 빈발 및 적발·관리 방치
  ※ 「유료도로법」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부정 감면행위자 처벌 등을 규정
- 별도 법인으로 설립한 배구단이 하이패스카드 구매해 홍보 명목으로 외부에 제공했음에도, 배포처 명단 등 기록관리가 부실하여 예산집행 적정성 검토가 곤란

2. 권익위 개선 방안

- 긴급차량 하이패스면제카드 발급 시 '신청차량 사진 첨부' 등 기준 구체화, '면제카드 부정사용 시 일정기간 혜택 정지' 등 벌칙 강화, 면제카드 사용 실태 현행화 등
- 배구단의 하이패스카드 제공 현황 관리대장 마련 및 자체 정기점검 강화

3. 기대 효과

- 고속도로 통행료의 꼼수 면제를 차단해 정당한 사용료 지불 문화 정착 및 감독기관 등 직무 관련 유관기관 공직자와의 비정상적 청탁 관행·업무유착 방지

사례 80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및 음주치료 의무화 한다

■ 과 제 명_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
■ 권고일자_ 2021. 4. 12.
■ 대상기관_ 경찰청
■ 기관수용, 2021. 12. 31.(이행 중)

1. 문 제 점

- 음주운전의 상습성,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고, 음주운전 민원은 총 12,423건('17~'19년)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음주운전 재범방지 및 사전 예방 필요
  ※ ('17)3,119건→ ('18)3,573건 → ('19)5,731건

2. 권익위 개선 방안

- 음주운전 행태 제어를 위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 음주운전 위반 정도를 고려해 차별화된 의무 설치 기간 설정
- 음주운전 습관 근원적 치유를 위한 음주치료 이수 의무화
  - 음주운전자의 성향, 정신상태, 알코올남용 정도 등을 분석해 맞춤형 치료

3. 기대 효과

-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및 음주운전 경각심 제고
-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비용 경감(연간 약 1조원 추정)

사례 81 도로점용료 납부고지 전 소유권 변동 확인한다

■ 과 제 명_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 권고일자_ 2018. 12. 3.
■ 대상기관_ 국토교통부
■ 기관수용, 2019. 6. 30.(이행완료)

1. 문 제 점

-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미흡으로 도로관리청은 양도자가 계속 점용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 양도인에게 점용료를 부과하여 민원 유발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 승계신고서에 양도인 날인을 요구하여 양도인 추적곤란 또는비협조 시 승계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발생

2. 권익위 개선 방안

- 도로점용료 납부고지 전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 시 실제 도로점용자(상속·양수인)에게 승계신고 안내
-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도로점용 승계신고 시 신고서상의 '부동산 양도인(피승계인) 날인' 생략

3. 기대 효과

- 도로점용 승계신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불필요한 민원 유발 해소로 행정처분의 신뢰 제고

사례 82 공공체육시설 특정단체 사용 제한한다

■ 과 제 명_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 대상기관_ 지방자치단체(243개), 교육청(17개 시·도), 교육부
■ 권고일자_ 2019. 10. 21.
■ 기관수용, 2021. 3. 31.(이행 중)

1. 문 제 점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특정단체의 장기사용으로 일반 주민의 신청은 제한되고 있어 불만민원 빈발
- 예약시스템 부실운영으로 체육시설 현황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예약현황 비공개로 인한 예약과정의 투명성 미흡

2. 권익위 개선 방안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및 공개로 예약의 투명성 확보
- 음주 · 흡연 · 취사 등 계약위반 시 일정기간 사용 제한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 강화

3. 기대 효과

-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예약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불필요한 민원 발생 사전차단 및 주민 만족도 제고

사례 83 의료분야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율 통제시스템 강화

■ 과 제 명_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안
■ 대상기관_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권고일자_ 2018. 2. 26.
■ 기관수용, 2018. 8.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의료분야 리베이트 감시 및 처벌 강화에도 불법 리베이트 지속 확인
  ※ 관련 민원 추이(국민신문고) : '14년 148건 → '15년 105건 → '16년 213건 → '17.7월 266건
-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으로 의약품 등의 유통질서 왜곡,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가중 및 건강보험 재정 악화 초래

2. 권익위 개선 방안

- 영업대행사의 리베이트 제공 시 처벌대상에 해당함을 공지
- 특정 의료기기 사용유도 행위 금지 등 관련 내용을 의료인단체 누리집 공지

3. 기대 효과

-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으로 건강보험 재정 연간 약 1조원 이상 절감
- 의료분야 유통질서의 투명성 확보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사례 84 채용비리로 계약 해지된 기간제 교원, 채용제한 근거 마련한다

■ 과 제 명_ 기간제 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 대상기관_ 교육부, 17개 광역시·도교육청
■ 권고일자_ 2017. 6. 12.
■ 기관수용, 2017. 12.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기간제 교원 채용 시 금품거래,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한 불공정 계약 등 관행화
- 일부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을 미끼로 한 금품수수, 특정인 특혜채용을 위한 채용절차의 자의적 운영 등 권한남용 사례 빈발
  ※ 실태조사 결과, 채용계획 미수립 48건, 미공고 46건, 평가표 미작성 2건 등 확인

2. 권익위 개선 방안

- 기간제 교원 등 교원 채용비리에 대한 고발조치 기준 등 마련
- 채용비리 적발 학교 등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 채용비리로 계약이 해지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채용제한 근거 마련

3. 기대 효과

- 기간제 교원 채용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로 채용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회복
- 채용공정성 확보로 연간 5만명 이상의 기간제 교원 채용 시 발생하는 불복절차 감소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사례 85 가정 배출 폐의약품 안전하게 별도 수거한다

■ 과 제 명_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
■ 대상기관_ 보건복지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권고일자_ 2020. 3. 23.
■ 기관수용, 2021. 9. 30.(이행 중)

1. 문 제 점

-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상당량의 폐의약품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토양·수질 오염의 위험 우려
  ※ 약국·보건소 통한 수거 8%에 불과, 쓰레기통·하수구 등 배출 55.2%
- 지자체 청소·환경부서와 보건소 간 업무분장 불명확, 지역 약사회와의 협력 미흡으로 인해 수거처리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

2. 권익위 개선 방안

- 폐의약품 수거방법 안내·기재 강화 등 원활한 수거체계 제도 마련
- 환경부 및 지자체 역할 명시 등 공공기관 중심 폐의약품 수거체계 강화
-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실적·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3. 기대 효과

-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체계 개선으로 토양·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및 국민건강 위해 요인 제거

사례 86 군 대체복무 취소 시 잔여기간 실제 복무기간 비율로 산정

■ 과 제 명_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권익 보호 방안
■ 대상기관_ 병무청
■ 권고일자_ 2020. 9. 7.
■ 기관수용, 2021. 9. 30.(이행 중)

1. 문 제 점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관련 불합리한 규정으로 민원 지속 발생

※ 병역의무자 편입 취소 시 기존 복무기간을 4분의 1만 인정(타 보충역과의 형평성 문제), 병역지정업체의 과도한 장기 수습기간 운영 제재방안 미흡 등

2. 권익위 개선 방안

- 산업지원 병역의무자 편입 취소 시 잔여복무기간을 실제 복무기간 비율에 따라 산정
- 병역지정업체의 과도한 수습기간 운영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
- 불합리한 병역처분에 대한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의 이의신청 제도 신설
- 병역의무자의 복무전념을 위한 권익보호 및 지원강화

3. 기대 효과

- 연구·산업분야 산업지원 병역의무자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의 고충 해소 및 안정적 복무환경 조성

사례 87 여권발급 제한기준 법령에 반영하고 국민에게 공개한다

■ 과 제 명_ 여권 발급 제한처분 실효성 제고 방안
■ 대상기관_ 외교부
■ 권고일자_ 2020. 5. 25.
■ 기관수용, 2021. 5. 31.(이행 중)

1. 문 제 점

- 여권은 관광·학업·기업활동 등 출국 수요와 맞물려 매년 5백만 건이 발급될 정도로 국민생활과 밀접하나, 여권발급 제한 처분관련 불합리 존재

2. 권익위 개선 방안

- 여권 발급 등 제한처분 세부기준을 내부문서가 아닌 「여권법 시행령」에 반영
- 제한처분의 세부기준을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안내 및 지자체 창구 등에 공개
- 「여권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발급 및 재발급 제한처분 제도 폐지·축소 검토

※ 2년 제한은 이중처벌 논란·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 제한 및 형법 위반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고려 필요

3. 기대 효과

-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던 여권 발급제한 처분 차단 및 여권관리 업무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사례 88 국·공립대학 교수 채용 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 과 제 명_ 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
■ 대상기관_ 교육부, 국·공립대학(49개)
■ 권고일자_ 2021. 6. 7.
■ 기관수용, 2021. 12. 31.(이행 중)

1. 문 제 점

- 블라인드 채용 도입 등 공정 채용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공·민간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공립대 교원의 채용절차 공정화는 미흡
  - 성별·생년월일·출신고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인적정보 요구 및 심사위원 제척 기준 미비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 미흡 및 채용서류 미반환 등 발생

2. 권익위 개선 방안

- 지원서 상 출신학교·성별·생년월일 등 불필요한 인적정보 요구 금지 및 대학교원 공정 채용 가이드라인 마련
- 지도교수, 공동연구자 등 지원자와 특수관계의 심사위원 제척 기준 마련
- 채용서류 반환근거 마련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한 구직자 권익보호 강화

3. 기대 효과

- 능력 중심 채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공정채용 기반 마련 및 올바른 채용문화 확산

사례 89 재난정책보험 가입 확대 통해 재난지원금 절감

■ 과 제 명_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합리적 복구 방안
■ 대상기관_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 권고일자_ 2021. 1. 11.
■ 기관수용, 2021. 7.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자연재해에 대비한 댐의 안정적 운영 및 복구계획 수립의 합리성 제고 필요
- 국비지원보다는 재난 정책보험가입을 통한 재난 대비 필요

※ 집중호우 관련 주택침수로 인한 보험금(약 4~7백만원)은 재난지원금(2백만원)의 2~3배

2. 권익위 개선 방안

- 댐 제약사항 해소대책 마련 시 관계부처·지자체 협력 의무화
- 댐 방류 민원 처리 시 민원 처리 결과를 관련 지자체로 통보하는 절차 마련
- 피해누락 및 축소신고 최소화를 위해 피해신고 및 시스템 입력 절차 안내 강화
- 각 부처 주관 재난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

3. 기대 효과

- 정책보험 가입 확대로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물 복구를 위한 예산을 재난보험금으로 대체 가능, 재난지원금 연간 약 1,700억원 절감

※ '19년도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1,730억원(2019 재해연보, 행안부)

사례 90 약학대 학생 현장실무실습 등록금에 포함되어야

■ 과 제 명_ 약학대 현장실무 실습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 권고일자_ 2018. 4. 9.
■ 대상기관_ 교육부 ■ 기관수용, 2018. 12.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약학대학생은 5~6학년 학기 중 병원, 제약사 및 약국 등에서 현장 실무 실습을 실시하여, 등록금 외 실습비 일부를 추가로 부담
  ※ 고등교육법(제22조)과 대학별 약학대 필수/심화실무실습 운영지침에 따라 의무 시행
- 또한, 동일과정의 실습임에도 학교별 실습비 부담액 책정방식이 달라 학생들의 불만 가중
  ※ 2016년 기준 국내 35개 약학대 중 10개가 등록금 외 실무실습비를 별도 징수

2. 권익위 개선 방안

- 학생들에게 등록금 외 실무실습비 추가 부담 금지 및 학교편의 위주로 실습비를 등록금에 포함시키는 인상조치 제한
- 적정수준 실습비가 집행되도록 '실습비 금액기준' 마련, 실습비 명세내역의 구체적 정보 홈페이지 공개

3. 기대 효과

- 약학대 실무실습비 회계 개선으로 학생의 추가 부담 경감 및 학교간 역차별 문제 해소, 약학대-병원·약국·제약회사 간 공모와 이권개입 여지를 차단

사례 91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 과 제 명_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 ■ 권고일자_ 2019. 3. 18.
■ 대상기관_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관수용, 2019. 9. 30.(이행완료)

1. 문 제 점

- 점자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등) 발급이 중증(1-3급) 시각장애인으로 한정되어, 그 외 등급(4-6급) 장애인에게는 정보 인식에 어려움 및 불편 발생
  ※ 등록 시각장애인(25만 3천여명) 중 4-6급 시각장애인(20만 3천여명)은 80.3%
-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 발급 신청서에는 점자스티커 신청란이 없음
-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인쇄물 접근 규정에 미반영되어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서비스 확산에 제약 발생

2. 권익위 개선 방안

- 점자 신분증 발급을 모든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확대
- 점자 신분증 신청란 마련으로 신청 용이성 제고
- 문자음성변환 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표준 바코드 반영

3. 기대 효과

-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생활 속 불편 감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사례 92 휴·폐업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 위험시설 안전조치 강화

■ 과 제 명_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 권고일자_ 2019. 4. 15.
■ 대상기관_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 기관수용, 2020. 4. 30.(이행완료)

1. 문 제 점

- 주유소 개설자는 저장탱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나, 경영악화 등으로 휴·폐업 시 철거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없이 주유소를 장기간 방치
- 주유소 폐업 경우 「석유사업법」에 따른 영업 폐쇄만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용도폐지'(위험물시설 철거) 신고가 병행되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

2. 권익위 개선 방안

- 임차주유소인 경우 소유자 지위승계 규정 마련, 신고의무 미이행자 과태료 상향, 주유소 폐업 시 안전조치 법률근거 마련, 휴·폐업 신고 시 위험물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등

3. 기대 효과

- 주유소 휴·폐업 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화재 발생 또는 가짜석유 저장탱크 사용 등을 차단해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

사례 93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대상에 기술계고 추가

■ 과 제 명_ 산업기능요원제도 운영 관련 고충해소방안 ■ 권고일자_ 2019. 3. 4.
■ 대상기관_ 병무청 ■ 기관수용, 2019. 9. 30.(이행완료)

1. 문 제 점

- 산업기능요원 근무를 통한 군 복무 대체제와 관련,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 등이 우선 배정되나, 설립취지·목적 및 교육과정이 유사한 종합고 실업계나 기술계대안고 졸업자 등은 우선배정에서 제외

2. 권익위 개선 방안

- 산업기능요원 우선배정 대상에 기술계 고교 추가
- 병역지정업체 채용·구인 관련 정보제공 확대 등

3. 기대 효과

- 연간 2,800여명의 기술계열 고교졸업자에게 산업기능요원 복무선택의 기회 부여

사례 94 불법행위 의료기관, 영업정지 기간동안 편법운영 차단

■ 과 제 명_ 의료기관 개설자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제고 ■ 권고일자_ 2018. 11. 5.
■ 대상기관_ 보건복지부 ■ 기관수용, 2019. 12. 31.(이행 중)

1. 문 제 점

- 행정처분으로 운영이 금지된 의료기관이 개설자 변경이나 폐업 후 개설 등 편법적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
  ※ 불법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처분유예 요청 후 처분 전에 폐업신고 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해짐('18.7. 권익위 실태조사)

2. 권익위 개선 방안

- 행정처분 효과 승계 및 행정처분 사실 고지의무화 규정 마련
-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도 휴·폐업 신고 대상에 포함, 기간 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3. 기대 효과

-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률 제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 '15~'17년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은 552건
- 의료기관의 편법운영 방지로 의료시장의 공정한 운영체계 구축

사례 95 공급자 과실로 인한 갑작스런 전기요금 부담 전가 안돼

■ 과 제 명_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 추가청구 및 납부 개선 ■ 권고일자_ 2019. 2. 18.
■ 대상기관_ 한국전력공사 ■ 기관수용, 2019. 8.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계량기 착오 등 운영기관의 과실로 전기요금을 과소청구해오다 사후 발견 시 사용자에게 미납액을 명목으로 추가납부 요구하는 관행 빈발
  ※ 과다 청구해 온 경우에는 환불 등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음
- 갑작스런 전기요금 부담가중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야기 및 소멸시효 도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운영기관에도 금전적 손실도 발생

2. 권익위 개선 방안

- 한전의 과실에 의한 과소청구요금의 추가청구 관련 근거 마련
- 사전안내 강화 및 납부 유예기간 도입 등 처리방식 개선
- 공급환경 변경 후 점검 등 요금관리체계 및 계약종별 세부기준 정비

3. 기대 효과

- 공급자 과실로 인한 전기요금의 추가 청구·납부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담 완화, 불필요한 분쟁 발생 사전차단 및 공공기관 신뢰 제고

사례 96 가짜석유 근절 위해 엄정한 고발·공표 시스템 마련해야

■ 과 제 명_ 가짜석유 유통 근절 실효성 제고방안 ■ 권고일자_ 2021. 9. 6.
■ 대상기관_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석유공사 ■ 기관수용, 2022. 9. 30.(이행완료 예정)

1. 문 제 점

- 정부의 수차례 대책 시행과 단속 강화에도 불구, 전국 주유소·판매소 등에서의 가짜석유 불법 유통으로 인한 차량엔진 고장 등 사례 지속 발생
  ※ '20년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판매로 254건, 정량미달 등으로 463건 각각 적발
-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적발에서 고발까지는 40일 이상이 소요되고, 지자체의 위반적발 행정처분에 대한 대국민 공표 체계와 홈페이지 정보 공개가 부실하게 운영

2. 권익위 개선 방안

- 시설개조 가짜석유 판매 등 중대위반 경우 적발 단계에서 즉시 고발하도록 기준 마련
- 지자체-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공표체계 강화 및 공표시스템 기능개선, 상시점검 등

3. 기대 효과

- 가짜석유 불법행위 차단 등 석유판매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형사처벌 실효성을 높여 석유판매업 위반 최소화 및 국민의 불안감 해소

사례 97 장기기증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및 유급휴가 확대

■ 과 제 명_ 장기기증 실효성 제고방안 ■ 권고일자_ 2021.3.15.
■ 대상기관_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 지방자치단체 ■ 기관수용, 2022. 2. 28.(이행 중)

1. 문 제 점

-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장기기증에 대한 두려움 및 편견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음
  ※ '20년 기준 뇌사 후 장기기증 희망등록비율 : 한국 3%, 미국 59%, 영국 39%

2. 권익위 개선 방안

- 장기기증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역할 구체화
- 생존 장기기증자 건강관리 지원기간 및 유급휴가 지원일수 확대
- 공공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기준 근거 마련 등 장기기증자 예우사업 확대

3. 기대 효과

-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증가는 장기이식 대기 환자 증가의 큰 요인으로 '18년 기준 혈액투석환자는 90,901명, 혈액투석 진료비는 2조 6,340억원('20.7월, 심평원)
- 장기이식은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가족에게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며, 국가적으로 요양급여 등의 의료비용 감소 효과 발생

사례 98 국가유공자 보호자 휴양림 입장료 면제로 예우 확대

■ 과 제 명_ 국립자연휴양림 국가유공자 입장료 면제범위 확대 ■ 권고일자_ 2019. 7. 15.
■ 대상기관_ 산림청 ■ 기관수용, 2020. 1. 31.(이행완료)

1. 문 제 점

- 전국 41개 국립자연휴양림 내 캠핑전용시설은 연간 350만명이 이용하고 있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사항을 규정하면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3급)의 동반보호자는 면제되지 않아 민원 발생

※ 국가유공자의 예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3급)의 동반보호자도 입장료 면제대상에 포함

2. 권익위 개선 방안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3급) 본인 외 보조자 역할을 하는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서도 입장료 면제

3. 기대 효과

-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에 합당한 예우 강화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사례 99 50세이상 은퇴연령층도 후계농 육성사업 지원가능!

■ 과 제 명_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연령제한 완화 ■ 권고일자_ 2020. 7. 20.
■ 대상기관_ 농림축산식품부 ■ 기관수용, 2021. 12. 31.(이행 중)

1. 문 제 점

- 후계농 육성사업의 지원 자격요건은 만 18세이상 ~ 만 50세미만으로, 실질적 정책수요자인 50대 이상 후계농업경영인에게 진입장벽으로 존재

※ 유사 사업인 임업인 후계자 사업 자격요건은 만 55세 미만

2. 권익위 개선 방안

- 후계농 육성사업의 나이제한을 '만 50세미만'에서 상향하여 더 많은 예비 후계농업경영인이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개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

3. 기대 효과

- 총사업비 480억원('21년)의 후계농 육성자금의 연령확대로 50세이상 은퇴연령층의 귀농증가 및 농업 인적자원 확보 가능

※ 50세 이상 은퇴연령층은 744만명('16년) → 882만명('21년)으로, '21년 현재 귀농인구는 1만 4천가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9%증가, 향후 10년까지 50대이상 귀농인구 증가예상

사례 100

군 지뢰 매설현황 등 공개로 주민안전 강화

■ 과 제 명_ 군(軍)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 ■ 권고일자_ 2021. 6. 7.
■ 대상기관_ 국방부, 문화재청, 산림청 ■ 기관수용, 2022. 6. 30.(이행완료 예정)

1. 문 제 점

- 6.25전쟁 시기부터 안보 목적으로 매설된 지뢰는 83만발 이상이고, DMZ·민통선 일대 외 후방지역의 지뢰 잔여량이 3천여발에 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 군 지뢰의 관리 및 제거 관련 법령 부재로, 군은 군사작전 개념으로 운영
- 지뢰 유실, 제거작업 시 민간 사고, 제거 지연 및 구역통제 미보상 사례 등 지속 발생,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계 관리 역시 부재

2. 권익위 개선 방안

- 지뢰지대 정보 지자체에 연 2회이상 통보, 법제도 마련 후 현황 일반공개, 공공사업 시 지뢰매설 장소 사전 확인하도록 '안전관리 매뉴얼' 반영
- 재산권 침해 보상·배상 절차 명확화, 위험구역 설정 적정성 확보, 지뢰의 안전관리와 계획적 제거 특별법 제정, 민간피해현황에 대한 국가통합관리 등

3.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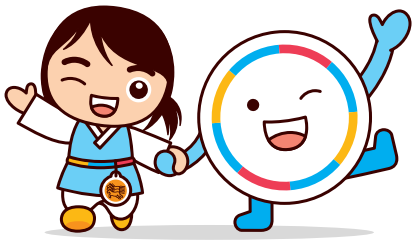
- 폭발물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 보상체계 구비 및 민간 지뢰피해자 국가배상 확립 등